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2010. 6

이 영 · 조명환

서 언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경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의 하나로 많은 국가들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투자 촉진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고 이의 결정과정에서 정치권 및 경제학자, 시민단체, 기업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정부, 기업들 사이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OSIRIS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감가상각 제도나 조세감면제도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본의 탄력성 추정을 통하여 국가별로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율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방도가 큰 국가일수록 자본의 탄력성이 높음을 보임으로써 국가의 법인세율 결정에 개방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국가별 법인세 부담이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 비교를 통한 법인세 부담 및 감면제도에 대한 본 보고

서의 분석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전세계 70여개국의 법인세 부담에 대한 광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법인세 부담과 관련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한양대학교의 이영 교수와 본 연구원의 조명환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세미나 참가자 및 익명의 평가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에 수고한 조문경 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이신정 연구행정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0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70여개 국가의 국가-산업-시기별 유효법인세율을 추정·분석하고, 감가상각비 공제 전·후의 유효법인세율을 추정하여 법정법인세율이 나타내주지 못하는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탄력성 추정을 통하여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인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개괄한다. 법인세와 관련한 기존의 문헌들로 우선 Harberger (1962), Ballard et al.(1985), Goolsbee(1998) 등 법인세로 인한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는 법인세가 법인과 비법인, 또는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 사이의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orgen (1963), Hall and Jorgenson(1967), Jorgenson and Yun(1991) 등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을 통하여 법인세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투자유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후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는 법인세부담과 투자 간에 역의 관계가 있다거나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법인세와 경제성장 에 관해서는 Jones and Manuelli(1990), King and Rebelo(1990), Lee and Gordon(2005) 등이 있으며 Lee and Gordon(2005)은 법인세가 경제성장 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OECD 주요국들의 명목법인세율을 우선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

하가 관찰되며 법인세율의 수렴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탄력적인 부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 국가별 법인세를 살펴보면 법인세율의 인하추세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증가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취해진 각종 감면제도의 축소, 법인 비중의 증가, 법인 소득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에서 제공하는 OSIRI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OSIRIS 데이터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38개국 49,000여 기업의 재무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Koester and Kormendi(1989)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세액을 세전이익에 OL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나오는 세전이익의 계수값을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추정의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24%로 비교 대상이 된 46개 국가 중 20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21%로 72개국 중 40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은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고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함으로써 국가별 감가상각제도로 인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대 후반에 있어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률은 3%로 비교대상 72개국 중 49번째로 높은 경감률을 보이고 있어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의 감가상각을 통한 세부담 감면율은 14~18%에 이르고, 감가상각을 통한 감면비율이 높은 국가들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OSIRIS 데이터는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 및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산업별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Energy, Materials, Industrials, Consumer Discretionary, Consumer Staples, Health Care, Financials,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 Services, Utilities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분과 테크놀로지 부분의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신, 보건, 유틸리티(utility) 등의 부문에서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법인세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본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는 1인당 GDP와 무역개방도, 그리고 이들 두 변수들과 유효법인세율 간의 교차항 등을 포함한다. 회귀분석은 OLS와 유효법인세율과 자본의 탄력성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국들의 유효법인세율의 가중평균을 도구변수로 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자본의 증가율이 세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력성이 큰 곳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생각하면,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경제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율을 높게, 그리고 개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통한 조세 감면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은 향후 법인세제 개편시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의 잔존가액의 폐지와 자산별 세법상 내용연수의 대폭 단축 등의 개편이 있는 이후 지금

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세부담 감면 효과가 큰 감가상각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 상시적인 세액공제 허용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대신 감가상각제도의 세부담 감면 효과가 좀 더 크도록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정책조합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회귀분석을 통해 개방국가로 갈수록 자본의 탄력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개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목 차

I. 서론	15
1. 연구 목적	15
2. 연구 내용	16
II. 관련 문헌 조사	18
1. 법인세와 초과부담	18
2. 법인세와 투자	22
3. 법인세와 경제성장	24
III.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27
1. 법인세 과세체계	27
2. 법인세율 변화	30
3. 감가상각제도	36
4. 투자세액공제제도	38
5. 기타 법인관련 공제감면 제도	41
IV. 법인세제의 국제 비교	45
1. 법인세율의 국제 비교	45
2. 법인세수의 국제 비교	48
V. 유효한계세율 분석	51
1. 데이터와 변수	51
2. 유효한계세율 분석 결과	51

VI. 법인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자본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하여	95
VI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3
참고 문헌	106
〈부록〉 주요국의 법인세제 현황	113
1. 미국	113
2. 영국	118
3. 캐나다	121
4. 일본	124
5. 싱가포르	128

표 목 차

〈표 III-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28
〈표 III-2〉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과정	29
〈표 III-3〉 법인세 과세체계	31
〈표 III-4〉 법인세율의 변화	33
〈표 III-5〉 2008년도 조세수입 실적	35
〈표 III-6〉 감가상각대상 자산	37
〈표 III-7〉 감가상각방법	38
〈표 III-8〉 투자지원을 위한 주요 법인세 감면 실적	39
〈표 III-9〉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40
〈표 III-10〉 투자 관련 조세지원 현황	41
〈표 III-11〉 법인세법상 지원내용	42
〈표 III-12〉 조특법상 지원내용	43
〈표 IV-1〉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법인세(지방세 포함) 세율 변화 추이	45
〈표 IV-2〉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49
〈표 IV-3〉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50
〈표 V-1〉 국가별·시기별 한계세율 및 감면비율	75
〈표 VI-1〉 변수 및 기초 통계량	96
〈표 VI-2〉 산업별 투자요인 모형, 유효한계세율, OLS	98
〈표 VI-3〉 산업별 투자요인 모형, 유효한계세율, IV	99

〈표 VI-4〉 산업별 투자요인 모형, 유효한계세율, IV	101
〈표 VI-5〉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102
〈부표 1〉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방식	114
〈부표 2〉 미국의 연방법인세 세율	115
〈부표 3〉 미국의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	116
〈부표 4〉 미국의 감가상각률	118
〈부표 5〉 영국의 법인세율	119
〈부표 6〉 영국의 감가상각률	121
〈부표 7〉 캐나다의 주정부 법인세율	123
〈부표 8〉 SR&ED 공제율 현황	124
〈부표 9〉 일본의 법인세율	126
〈부표 10〉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28
〈부표 11〉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129
〈부표 12〉 싱가포르의 감가상각률	130

그림 목 차

[그림 III-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34
[그림 IV-1] 법정법인세율의 추이(1980~2006)	47
[그림 V-1]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1990년대 초반 ·	53
[그림 V-2]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1990년대 후반 ·	54
[그림 V-3]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2000년대 초반 ·	55
[그림 V-4]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2000년대 후반 ·	56
[그림 V-5]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1990년대 초반	57
[그림 V-6]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1990년대 후반	58
[그림 V-7]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2000년대 초반	59
[그림 V-8]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2000년대 후반	60
[그림 V-9] 감면율: 1990년대 초반	62
[그림 V-10] 감면율: 1990년대 후반	63
[그림 V-11] 감면율: 2000년대 초반	64
[그림 V-12] 감면율: 2000년대 후반	65
[그림 V-13]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1990년대 초반 ·	66
[그림 V-14]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1990년대 후반 ·	66
[그림 V-15]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2000년대 초반 ·	67
[그림 V-16]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2000년대 후반 ·	67
[그림 V-17]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버뮤다,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칠레	69

[그림 V-18]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중국, 케이맨제도,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70
[그림 V-19]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영국,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70
[그림 V-20]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71
[그림 V-21]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 터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71
[그림 V-22]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 한국(시계열자료) ·	73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 70여개 국의 국가-산업-시기별 유효 법인세율을 추정·분석하고,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국가-산업-시기별로 추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을 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유효법인세율을 추정하여 이를 비교하여 감면율도 추정하였다. 이러한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을 통해 법정법인세율이 나타내주지 못하는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의 효과를 포착해 낼 수 있으며, 특히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법인세 부담의 감소폭도 측정해 낼 수 있다.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법인세 부담의 감소폭을 측정하는 것은 법인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감가상각 부분을 분리하여 감가상각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향후 감가상각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감면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보다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유효법인세율의 결정 요인을 초기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국가의 개방도와 경제발전 단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투자의 법인세율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유효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식별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¹⁾.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아직까지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인 공헌도 높을 것이다. 단,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선행연구가 없었던 만큼 연구가 어렵고 연구결과는 아직 초기적인 형태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산업-시기별로 유효법인세율을 엄밀히 추정하였던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자료가 이용 가능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기업 수준의 재무데이터를 집대성한 OSIR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산업-시기별로 법인세율을 추정하였다. OSIRIS 데이터는 1985년에서 2008년 사이의 세계 각국의 기업의 재무자료를 모아 놓은 자료이며, 분석을 위하여 1985~1989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8년의 4개의 5년 기간 표본을 구성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Koester and Kormendi(1989)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각 국가-산업-시기별 표본에 대한 법인세수를 세전이윤에 대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하여 추정된 세전이윤의 계수를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치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금이월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포함하였다. 동일한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감가상각의 효과를 포함 또는 미포함한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Slemrod(2004)는 법인세율은 국가의 재정수입과는 명확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가의 개방도와는 미약하지만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① 감가상각 공제를 포함한 통상적인 세전이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유효세율을 추정
- ② 감가상각 공제를 제외한 이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유효세율을 추정

감가상각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적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들의 투자가 감소했음에도 기인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감가상각제도 자체의 감면효과가 적음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투자 촉진을 위하여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감가상각 제도에서 신규투자의 비용을 보다 크게 하고 초기에 공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신규투자의 비용 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정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직접적으로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가 법인세율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추정하였다. 기업 투자의 법인세율에 대한 민감도는 해당 국가의 개방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도가 큰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높일 경우 투자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업의 투자 결정요인으로 법인세율, 개방도, 그리고 법인세율과 개방도 간의 교차항을 포함한 회귀식을 통해 검증하려 하였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1986~2008년의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법인세율과 개방도 간의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으로 나타나 개방된 국가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법인세율을 경쟁력 있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II. 관련 문헌 조사

1. 법인세와 초과부담

다른 조세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는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원배분을 왜곡함으로써 경제 내의 비효율을 가져온다. 특히 법인세가 유발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은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간의 왜곡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역시 과세대상인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형태로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이전에 법인단계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이자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나 투자세액공제 등을 허용하여 법인을 통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 세율을 다르게 한다. 이러한 세율의 차이는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간의 세후 자본비용의 차이를 가져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법인세의 왜곡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로는 Harberger(1962)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Harberger(1962)는 경제를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으로 나누고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세를 고려하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법인세의 귀착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Mieszkowski(1967)는 법인세로 인한 왜곡효과를 산출효과(output effect)와 요소 대체효과(factor-substitution effect)로 구분하였다. 산출효과란 법인세의 부과가 법인부문의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법인부문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법인부문에 집약적인 생산요소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말한다. 또한 요소대체효과는 법인세가 생산요소 중 법인부문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임으로써 법인부문의 자본 수요를 줄이게 되

는 효과를 말한다²⁾.

법인세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 자연스럽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법인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후생감소를 가져오는가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Harberger(1966)는 1953~1959년의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인부분에 높은 세율이 부과될 때 이로 인한 자중손실의 크기가 10억~29억 달러 정도라고 주장하였고, Shoven(1976)은 Harberger(1966)의 추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할 경우 같은 기간 자본에 대한 과세로 인한 자중손실이 약 6억달러에서 18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³⁾. 같은 기간 자본으로 부터의 연평균 세수가 약 372억달러였음을 고려하면 Shoven(1976)이 추정한 자본과세로 인한 자중손실은 세수 대비 0.8%에서 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Gravelle and Kotlikoff(1989)는 Harberger(1962)의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초과부담을 측정하는 것은 법인부분과 비법인부분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같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허용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법인세의 자중손실이 이전 연구들에서 계산된 자중손실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Ballard et al.(1985)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1986년 세계개편 이전의 세목별 한계부담을 저축 탄력성과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여러 가지로 주어진 경우에 관해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수 1단위가 증가하였을 때 한계초과부담은 0.181에서 0.463 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저축탄력성과 노동의 공급탄력성에 상관없이 전체 세수 1단위의 한계초과부담에 비해 법인세수 1단

2)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개관은 Auerbach(1985)과 Auerbach and Hines(2002)를 참조하라.

3) Harberger(1966)는 조세로 인한 비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세율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Stiglitz(1976)은 기업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임을 지적하였고 이후 법인세와 기업의 행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평균세율보다 한계세율이 고려되었다.

위의 한계초과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Jorgenson and Yun(1993)은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미국의 1986년 세계개편 전·후의 세목별 초과부담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법인세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이 노동소득이나 판매세 등으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보다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법인세로 인한 왜곡은 법인부문의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들 사이의 차별적 대우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더불어, 법인세가 법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비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ordon and Mackie-Mason(1994, 1997)와 Goolsbee(1998) 등이 있다. Gordon and Mackie-Mason(1994, 1997)는 미국의 세계개편 이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인세의 왜곡효과가 크다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비법인의 형태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선호하며, 결손이 많은 기업일수록 법인 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보였다. 반면에 Goolsbee(1998)는 1900~1939년의 미국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로 법인세가 기업의 법인·비법인의 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였으며, 법인세로 인한 초과부담의 크기도 세수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치·경제적 여건, 정부 지출의 수준, 주변국들과의 조세경쟁의 정도, 개방도 등은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인세의 초과부담 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Slemrod(2004), Winner(2005), Stewart and Webb(2006) 등의 연구가 있다. Slemrod(2004)은 1980~199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율은 국가의 재정수입과는 명확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가의 개방도와는 미약하지만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방된 국가일수록 법인세율을 낮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Winner(2005)은 1965~2000년의 OECD 23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의 이동성이 커질수록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은 감소하고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II. 관련 문헌 조사 21

발견하였다. 반면에, Stewart and Webb(2006)은 1950년대 이후의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 사이에 법인세에 관한 조세 경쟁이나 동조화 현상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 사이에는 법인세율의 동조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의 여러 요인들과 법인세율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좀 더 근원적으로 자본의 탄력성을 통해 법인세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와 차별된다.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대해서 국외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연구도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초과부담의 측정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윤건영·김중웅(1995)이라 할 수 있다. 윤건영·김중웅(1995)은 Jorgenson and Yun(1993)이 사용했던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세의 비효율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김성태 외(2003)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경우 계층간 소득분배 효과 및 후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김승래·김우철(2007) 역시 CGE 모형을 이용한 1970~2004년의 실증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승래·김우철(2007)의 분석 결과는 해당기간 동안의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한계효율비용은 자본과세 29.8%, 노동과세 21.2%, 일반소비과세 15.5%, 수입과세 9.6%로 나타나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다른 과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4) 한편, 정부지출과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면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reher, Sturm and Ursprung(2008)은 1971~2001년의 60개국 자료와 1990년 이후의 OECD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화(globalization)의 정도가 정부 지출의 구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그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하기는 하였지만, 이론적 접근 이외에 실증적 접근은 개별 국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각국의 조세의 초과부담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고는 OSIR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는 약 70개국의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유효법인세율을 산업별로 추정하여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초과부담이 유효법인세율의 제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초과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법인세와 투자

법인세제를 통한 조세정책 수립시 종종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법인세제를 통한 경기 활성화이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나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의 정책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Jorgenson(1963)과 Hall and Jorgenson(1967)은 자본시장의 균형조건으로부터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한 단위의 자본을 1기 동안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할인율, 경제적 감가상각률, 회계상 적용받는 감가상각률, 자본 1원당 이자비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낮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기업의 목표 자본량(desired capital stock)과 투자를 증가시킨다.

II. 관련 문헌 조사 23

Jorgenson(1963) 등이 제시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는 자본소득세만 고려하였고 주주에게 부담되는 배당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고려하지 않았는데, Auerbach(1979)은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고려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Jorgenson and Sullivan(1981)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을 통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한계유효법인세부담(marginal effective corporate tax wedge)을 측정하였다⁵⁾.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Jorgenson(1963)과 Auerbach(1979) 등이 제시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을 이용하여 가용한 실증자료들로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을 측정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King and Fullerton(1984), Jorgenson and Yun(1991), Jorgenson and Landau(1993), Djankov et al.(2008)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연구로는 광태원(1985), 윤건영(1988), 윤건영·임주영(1993), 원윤희(1996), 윤건영·김종웅(1997), 원윤희·현진권(2000) 등이 있다.

특히 비교적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국내연구로는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 이윤재·김경표(2004), 김현숙(2004), 광태원·이병기·현진권(2005), 김우철(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 등에 따라 상반되게 나오거나 유의성이 떨어지는 등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가 명확한 부(-)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은 17개 OECD 국가들 패널자료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하였고, 한계유효세율은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할 경우 투자와 부(-)의 관계를 보이지만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경우는 투자와 정(+)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5) 자본에 대한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에 대한 개념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Fullerton(1984)을 참조하라.

이운재·김경표(2004)는 1986~1997년의 우리나라 제조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금융비용이나 매출액 등에 비하여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또한 한계유효세율의 변화는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 제조업 투자에 다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김현숙(2004)은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았는데, 제조업에서만 세부담과 투자 사이에 유의한 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세부담과 투자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곽태원·이병기·현진권(2005)은 Tobin(1969) 이후 발달해 온 Q-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1985~2004년간 상장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해 조세조정 Q를 추정하고 이것이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법인세율 및 조세경감정책을 포함한 법인세제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2005)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개별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토빈의 Q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부담은 투자에 전반적으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현금흐름 등에 비해 설명력이 부족하고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 사이에 안정적 관계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3. 법인세와 경제성장

자원분배에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징수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Jones and Manuelli, 1990; Rebelo, 1991), 조세징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II. 관련 문헌 조사 25

분석 연구는 실제 경제성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예를 들면, King and Rebelo, 1990; Jones, Manuelli and Rossi, 1993)와 그렇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예를 들면, Lucas, 1990; Stokey and Rebelo, 1995)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Lucas(1990), King and Rebelo(1990), Jones, Manuelli and Rossi(1993), Stockey and Rebelo(1995) 등의 연구는 주로 미국 자료에 기초하여 조세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측정(calibration)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조세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혼재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조세징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회귀분석(growth regression)함으로써, 조세징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국가들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로는 Skinner(1987), Koester and Kormendi(1989), Easterly and Rebelo(1993), Dowrick(1996), Agell, Lindh and Ohlsson(1997), Leibfritz, Throltolsand Bibbee(1997), Mendoza, Milesi-Ferrettisand Asea(1997)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에 조세 자체 또는 조세의 왜곡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으로써 그러한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 역시 혼재되어 나타난다. 조세 또는 조세의 왜곡을 나타내는 변수가 경제성장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최근 가용해진 법인세율 원자료를 이용하여, Lee and Gordon

(2005)은 법정 법인세율과 경제성장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여러 다른 성장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였을 뿐 아니라 고정효과 모형에서도 법인세의 인하가 경제성장의 촉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였다. 또한 Lee, Sung and Kim(2009)은 70개국의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부문별 조세차별이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1. 법인세 과세체계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 직접세, 소득세,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법인세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한다.

법인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분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에 얻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청산(합병·분할)시 발생된 점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성격이 유사하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중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영리 내국법인만이 청산소득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유형별 납세의무는 <표 III-1>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	과세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의미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10년 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법인세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사업연도에 대해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한다⁶⁾. 끝으로, 산출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9.1)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90.4%가 2010년부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III.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29

세액에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정해진 각종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미신고·미납부 가산세 등을 추가하면 최종적 의미에서의 결정세액이 정해진다. 법인은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의 형태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일부를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이전에 납부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표 III-2>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표 III-2>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과정

구 분	계산방법
사업연도 소득	익금 - 손금
과세표준	사업연도 소득 - 10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고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납부, 중간예납, 수시부과)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이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거나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특별한 형태의 법인세라 할 수 있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전국에 소재한 것이 과세대상이나, 그 이외의 부동산은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과세대상이다(즉,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등 법인세 과세체계 현황은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법인세할)로 납부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2. 법인세율 변화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누진세율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였고 이후 법인세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30%의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2009년에는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전체 법인의 90%(약 32만개 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2010년 사업연도분부터 2억원 이하에 대하여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질 예정이다.

〈표 III-3〉 법인세 과세체계

과세 소득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구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1~12.31 개시 사업연도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과 사 업 연 도 소 득	내국 법인	일반법인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 금산입 · 익금불산입 - ①이월결손금 - ② 비과세소득 - ③소득공제액	2억원 이하	11%	11%	10%
			2억원 초과	25%	22%	22%
	조합법인 등	12%	9%	9%		
	결산제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9%				
외국 법인	국제사업장 · 부동 자산소득이 있는 외 국법인	총합계액 - ①국내발생 이월결손금 - ②비과세소득 - ③상호면제 의 외항소득	내국법인의 세율 적용			
	기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 상호면제의 외항소득	2~20%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과 사 업 연 도 소 득

〈표 III-3〉의 계속

과세 소득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구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1~12.31 개시 사업연도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청산 소득	영리 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분할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자기자본총액	2억원 이하	11%	11%	10%
		합병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자기자본총액	2억원 초과	25%	22%	22%
				조합법인 등	12%	9%	9%
토지 등 양도 소득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10% (미등기 양도토지 등: 20%)			
				30% (미등기 양도토지 등: 40%)			

자료: 조세편람(2009)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33

〈표 Ⅲ-4〉 법인세율의 변화

구분 ¹⁾	일반법인	공공법인
1990	8천만원 이하 20% (20%) 8천만원 초과 30% (33%) ²⁾	조합법인 5% 기타법인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15%
1991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5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
1996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³⁾
2002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조합법인 12%
2004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조합법인 12%
2008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조합법인 12%
2009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⁴⁾	조합법인 9%

주: 1) 법령의 시행일 기준

2) 괄호 안은 비상장대법인에 대한 세율

3) 조합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1999년까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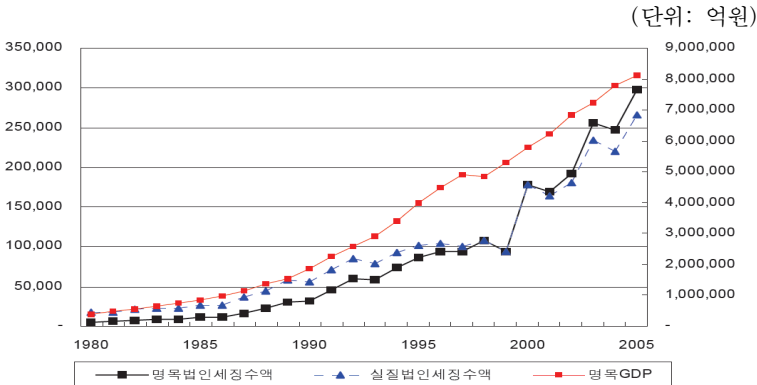
4)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2%의 세율 적용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이러한 법인세율의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은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부담이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하고,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법인세 관련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명목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명목법인세율이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III-4>는 1990년 이후 내국법인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세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의 지속적 하락과 과표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1995년에는 약 8.5조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7년에는 35.4조원 수준으로 12년 사이에 약 4배 이상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명목GDP가 약 399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약 2.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수의 증가가 법인세수의 증가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림 III-1]은 1980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 징수액 및 GDP를 보여준다.

[그림 III-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자료: 김우철(2007).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35

여기서 보면 법인세수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가 지나면서 법인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우철 (2007)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개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감소한 반면에 구조조정 성과에 기인한 기업의 수익률 개선과 전체 법인 수의 증가, 그리고 규모에 따른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등이 법인세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한다.

〈표 Ⅲ-5〉 2008년도 조세수입 실적

(단위:백만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증감액	비율
합계	165,562,300	167,305,992.0	1,743,692	101.1
가. 내국세	135,701,800	136,556,310.0	854,510	100.6
(1) 소득세	38,015,200	36,355,129.0	-1,660,071	95.6
(2) 법인세	36,284,100	39,154,490.0	2,870,390	107.9
(3) 부당이득세	0	0.0	0	0.0
(4) 상속세	3,951,000	2,777,061.0	-1,173,939	70.3
(5) 재평가세	0	0.0	0	0.0
(6) 부가가치세	43,929,000	43,819,768.0	-109,232	99.8
(7) 개별소비세	4,596,400	4,499,380.0	-97,020	97.9
(8) 주세	2,530,900	2,829,355.0	298,455	111.8
(9) 전화세	0	16.0	16	0.0
(10) 증권거래세	3,166,700	2,787,538.0	-379,162	88.0
(11) 인지세	627,900	572,888.0	-55,012	91.2
(12) 기타내국세	2,600,600	3,760,683.0	1,160,083	144.6
나. 관세	7,202,600	8,775,691.0	1,573,091	121.8
다. 방위세	0	323.0	323	0.0
라. 교통·에너지·환경세	12,035,500	11,909,295.0	-126,205	99.0
마. 교육세	4,116,900	4,179,572.0	62,672	101.5
바. 농어촌특별세	3636000	3754938	118938	103.3
사. 종합부동산세	2869500	2129863	-739637	74.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표 Ⅲ-5〉는 2008년도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실적을 보여준다. 수납액을 기준으로 2008년 우리나라의 총조세수입은 167.3조원이며 이 중 법인세로부터의 수입은 약 39.2조원으로 법인세는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의 약 23.4%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의 약 71.3%를 차지하고 있다.

3. 감가상각제도

감가상각이란 투자로 구입된 자본재 중 생산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 라고 볼 수 있는 고정자산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등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과 건설중인 자산(단,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완성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상각 가능),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예: 토지)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표 Ⅲ-6〉과 같다⁷⁾.

7)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III.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37

〈표 III-6〉 감가상각대상 자산

구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유형 고정자산	건물 및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 ¹⁾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 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 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²⁾ , 사용 수익기부자산가액, 주차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주: 1)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합병법인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및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 등

2)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재경부 법인-132, 2005. 2. 16)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잔존가액이 적을수록 감가상각 폭이 크다. 현재 세법상의 잔존가액은 “0”이며 내용연수는 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⁸⁾, 상각방법은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⁹⁾. 다음의 〈표 III-7〉은 감가상각대상 자산 구분에 따른 신고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6항 및 7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9)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4항

〈표 III-7〉 감가상각방법

구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기타 유형 고정자산	정률법과 정액법(광업용 유형 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 기능) 중 선택 가능	정률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 자산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가능	생산량비례법

4. 투자세액공제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일몰연장 등을 통해 거의 상시화되어 있다.¹⁰⁾

투자지원에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다른 조세지원제도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은 2002년 이래로 증가하여 2005년에 2조 5천억원에 이르렀다가 2008년에는 2조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III-8〉과 〈표 III-9〉를 함께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증가한 다음 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이 감소하고, 공제율이 감소한 다음 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의 변화는 투자의 증감에

10) 1968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1974년까지 유지되다가 1980년 6월 폐지. 이후 1983년 1월부터 1985년 6월, 1987년 1월부터 1989년 6월, 1995년 1월부터 1997년 6월,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의 기간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었다.

III.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39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공제율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9년 말 일몰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투자에 대하여 일몰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표 III-8〉 투자지원을 위한 주요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49	127	81	253	48	63	9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219	523	529	350	510	459	1,12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523	475	546	302	280	393	320
환경·안전 설비투자 세액공제	107	165	84	144	112	128	177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159	465	229	231	282	675	1,30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공제	-	-	-	-	-	-	0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50	31	39	68	95	110	148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2,009	1,798	3,490	5,446	3,661	4,024	4,933
임시투자세액공제	6,309	12,778	17,806	24,577	19,894	17,538	20,344
합계	9,525	16,362	22,804	31,371	24,882	23,390	28,440

주: 2008년은 잠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3~2008.

11) 김유찬·주기중(2004)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표 III-9〉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적용기간	공제율
2000. 1. 1 ~ 2000. 6. 30	7%
2000. 7. 1 ~ 2000. 12. 31	실시하지 않음
2001. 1. 1 ~ 2003. 6. 30	10%
2003. 7. 1 ~ 2004. 12. 31	15% ¹⁾
2005. 1. 1 ~ 2005. 12. 31	10%
2006. 1. 1 ~ 2008. 12. 31	7%
2009. 1. 1 ~ 2009. 12. 31	10% (3%) ²⁾

주: 1)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규정됨
 2) 괄호 안은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임.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배제되어 왔음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외에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¹²⁾.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의 경우 조세감면혜택이 배제된다¹³⁾. 투자 관련 조세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 III-10〉과 같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의 배제)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표 III-10〉 투자 관련 조세지원 현황

대 상	근거법령	지원 내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	해당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조특법 §11	해당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조특법 §24	해당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조특법 §25	해당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조특법 §25의2	해당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	조특법 §25의3	해당 투자금액의 8%를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4	해당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업종별로 특정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수도권과밀억제구역 3%)를 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해당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조특법 §121의2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법 §144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5. 기타 법인관련 공제감면 제도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지원, 연구 및 인력 개발, 고용지원, 구조조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조세특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Ⅲ-11〉과 〈표 Ⅲ-12〉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내용이 정리하고 있다.

만약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기간제한이 있는 감면)과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등)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¹⁴⁾.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 등은 법인세법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표 Ⅲ-11〉 법인세법상 지원내용

구분	근거법령	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58	*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농업소득세세액공제	법 §58의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공제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의 배제)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43

〈표 Ⅲ-12〉 조특법상 지원내용

구분	근거법령	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7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5~30%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2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0일 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4%(중소기업 0.5%)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1~60일 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15%(법인세의 10% 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25%(일반법인 6% 한도) 또는 초과발생액의 40%(중소기업 50%) 세액공제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조특법 §12②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산업 및 연구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공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2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22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30의2	'07. 12. 31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09.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

〈표 III-12〉의 계속

구분	근거법령	내용															
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 §63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63의2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4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	법인이 직접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 공제															
제3자물류비용 세액 공제	조특법 §104의14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 공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8 §121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100% 법인세 감면															
최저한세제도	조특법 §123	<p>①과 ② 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 ②: 감면 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최저한세율</p> <p style="text-align: righ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th> <th>'09.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th> <th>'09.12.27이후 개시 사업연도</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r> <td rowspan="2">일반</td> <td>1천억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r> <tr> <td>1천억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r> </tbody> </table>	구분	'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09.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09.12.27이후 개시 사업연도	중소기업	8	8	7	일반	1천억 이하	13	11	1천억 초과	15	14
구분	'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09.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09.12.27이후 개시 사업연도														
중소기업	8	8	7														
일반	1천억 이하	13	11														
	1천억 초과	15	14														

IV. 법인세제의 국제 비교

1. 법인세율의 국제 비교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는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표 IV-1>에 나타나 있듯이, 1980년대 주요 국가들의 최고법인세율은 지방세분을 포함하여 평균 46.5%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평균 36.7% 수준으로 낮아졌고 2000년대에 와서는 평균 31% 수준으로 인하되었다(김학수, 2009). 2007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일랜드가 13.9%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 강국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세율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수, 2009).

<표 IV-1>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법인세(지방세 포함) 세율 변화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한 국	32.3	32.3	32.3	30.3	27.5	27.5	27.5	32.3	33.0	28.9
호주	46.0	39.0	36.0	34.0	30.0	30.0	30.0	44.5	35.8	30.0
오스트리아	55.0	30.0	34.0	34.0	25.0	25.0	25.0	50.0	32.8	29.5
벨기에	45.0	41.0	40.2	40.2	34.0	34.0	34.0	44.6	39.9	35.5
캐나다	52.8	44.3	44.6	43.6	36.1	36.1	36.1	49.7	44.4	36.7
덴마크	50.0	40.0	34.0	32.0	28.0	28.0	25.0	45.0	34.0	28.3
핀란드	61.8	44.5	25.0	29.0	26.0	26.0	26.0	56.0	29.7	27.5

〈표 IV-1〉의 계속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프랑스	50.0	42.0	36.7	37.8	35.0	34.4	34.4	46.6	37.7	35.1
독일	60.0	54.5	55.1	52.0	38.9	38.9	38.9	59.5	55.1	38.0
그리스	49.0	46.0	35.0	40.0	32.0	29.0	25.0	46.8	37.9	31.7
아일랜드	50.0	43.0	38.0	24.0	12.5	12.5	12.5	47.8	35.4	13.9
이탈리아	46.4	46.4	53.2	37.0	33.0	33.0	33.0	44.9	47.6	33.2
일본	-	50.0	50.0	40.9	39.5	39.5	39.5	50.0	47.8	40.0
네델란드	43.0	35.0	35.0	35.0	31.5	29.6	25.5	42.6	35.0	31.3
뉴질랜드	45.0	33.0	33.0	33.0	33.0	33.0	33.0	41.5	33.0	32.6
노르웨이	50.8	50.8	28.0	28.0	28.0	28.0	28.0	50.8	30.3	28.0
스페인	35.0	35.0	35.0	35.0	35.0	35.0	32.5	34.4	35.0	34.1
스웨덴	56.6	53.0	28.0	28.0	28.0	28.0	28.0	57.0	28.6	28.0
스위스	31.9	30.6	28.5	24.9	21.3	21.3	21.3	31.9	27.6	22.8
영국	40.0	34.0	33.0	30.0	30.0	30.0	30.0	41.3	32.0	29.8
미국	49.8	38.7	39.6	39.3	39.3	39.3	39.3	45.9	39.4	39.3
단순평균	48.3	41.5	37.1	34.7	30.6	30.4	29.7	46.5	36.7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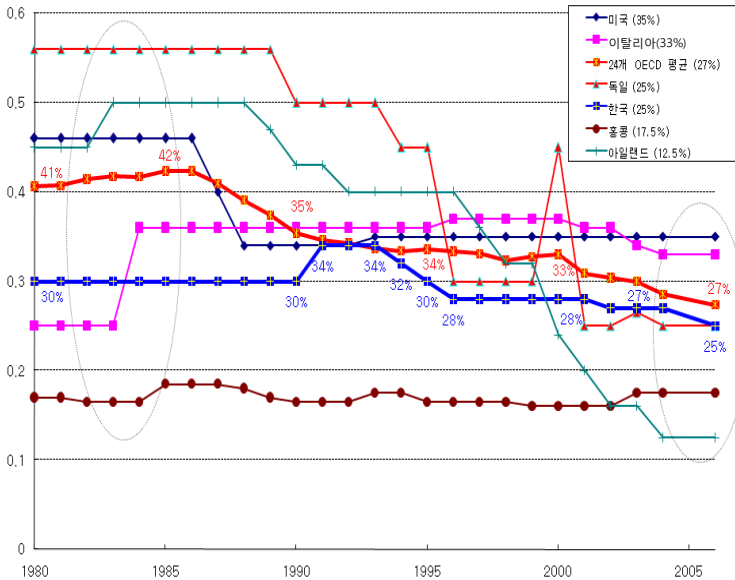
주: 지방세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고 한국의 2000년 이전 세율은 저자가 보완했음.

자료: 김학수(2009)에서 인용. OECD Tax Database(2008)

[그림 IV-1]는 주요국의 1980~2006년의 법정법인세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법정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인하되어 평균세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법인세율의 수렴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IV. 법인세제의 국제 비교 47

[그림 IV-1] 법정법인세율의 추이(1980~2006)



이러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세는 국제화에 따라 법인소득의 이동성이 증대하면서 자본의 수요탄력성이 커지면서 ‘탄력적인 부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⁵⁾. 본 보고서의 제5절과 제6절에서 보고하고 있는 개방 정도에 따른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의 관계 약화나, 개방 정도에 따른 투자의 법인세율 탄력성의 강화는 보다 개방된 국가에서 법인세율이 낮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15) Ramsey(1927)는 그의 최적조세이론에서 효율적인 조세구조는 탄력성이 낮은 곳에 높은 세율을, 탄력성이 높은 곳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를 가진다고 하였다.

2. 법인세수의 국제 비교

2000년대 OECD 국가들에서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표 IV-2〉 참조).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 또한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IV-3〉). 이러한 법인세수의 증가는 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동시에 취하여진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2) 법인 비중의 증가 (3) 법인소득의 증가 (4) 법인의 재무구조 중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 비중의 감소 등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법인세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법인 수와 법인소득의 증가, 이자비용의 감소로 인한 과표의 증가(김우철, 2009),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IV. 법인세제의 국제 비교 49

〈표 IV-2〉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캐나다	14.9	11.3	13.6	11.6	8.2	7.0	8.2	12.2	10.5	11.0
멕시코										
미국	16.4	13.2	11.4	10.8	7.5	8.9	10.3	8.7	11.7	11.0
호주	16.3	17.0	12.4	12.2	9.4	14.1	14.8	20.2	19.4	23.1
일본	22.2	26.3	20.6	21.8	21.0	22.4	15.9	13.8	15.5	16.8
한국			8.9	11.0	11.4	13.5	12.3	14.1	16.0	15.1
뉴질랜드	20.7	17.8	11.8	7.8	8.3	6.5	11.9	12.4	16.8	14.2
오스트리아	5.4	4.4	4.3	3.5	3.5	3.6	3.3	4.6	5.2	5.8
벨기에	6.2	6.5	6.9	4.7	4.9	4.8	5.4	7.2	7.7	8.2
체코							12.2	9.8	12.0	13.4
덴마크	4.5	2.7	3.2	3.2	4.8	3.7	4.8	6.6	7.7	7.4
핀란드	8.1	5.3	4.7	3.4	3.4	4.5	5.0	12.5	7.6	9.0
프랑스	5.3	6.3	5.2	5.1	4.5	5.3	4.8	6.9	5.5	6.8
독일	7.8	5.7	4.4	5.5	6.1	4.8	2.8	4.8	4.9	6.1
그리스	1.8	1.6	3.4	3.8	2.7	5.5	6.3	12.2	10.3	8.0
헝가리							4.5	5.7	5.7	7.0
아이슬란드	1.8	2.0	2.6	2.5	3.1	2.8	3.0	3.3	4.9	6.1
아일랜드	9.1	8.8	4.8	4.5	3.2	5.0	8.5	11.8	11.2	10.9
이탈리아	6.9	6.5	6.3	7.8	9.2	10.0	8.7	6.9	6.8	8.8
룩셈부르크	11.0	19.3	15.6	16.2	17.7	15.8	17.7	17.8	15.4	14.9
네덜란드	8.1	6.7	7.7	6.6	7.0	7.5	7.5	10.1	9.8	8.7
노르웨이	3.8	3.3	2.9	13.3	17.2	9.0	9.2	20.9	27.0	26.0
폴란드							7.7	7.4	7.5	7.9
포르투갈						8.0	7.4	11.4	8.0	10.1
슬로바키아								7.7	8.7	10.2
스페인	9.2	8.2	6.9	5.1	5.1	8.8	5.4	8.9	10.7	12.4
스웨덴	6.1	4.4	4.3	2.5	3.5	3.1	5.8	7.6	7.5	7.9
스위스	7.7	8.2	8.5	6.4	6.8	7.6	6.6	9.0	8.9	10.6
터키	4.8	6.4	5.1	4.1	9.5	6.7	6.7	7.3	7.1	6.8
영국	4.4	8.7	6.2	8.4	12.6	9.9	8.1	9.8	9.3	9.4
OECD 합계	8.8	8.7	7.6	7.6	8.0	8.0	8.0	10.1	10.3	10.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2009).

〈표 IV-3〉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캐나다	3.8	3.5	4.3	3.6	2.7	2.5	2.9	4.4	3.5	3.7
멕시코										
미국	4.0	3.6	2.9	2.8	1.9	2.4	2.9	2.6	3.2	3.1
호주	3.4	3.7	3.2	3.2	2.7	4.0	4.2	6.3	6.0	7.1
일본	4.0	5.2	4.3	5.5	5.7	6.5	4.3	3.7	4.3	4.8
한국			1.3	1.8	1.8	2.4	2.3	3.2	3.8	4.0
뉴질랜드	5.0	4.7	3.4	2.4	2.6	2.4	4.4	4.2	6.3	5.1
오스트리아	1.8	1.5	1.6	1.4	1.4	1.4	1.4	2.0	2.2	2.4
벨기에	1.9	2.2	2.7	1.9	2.2	2.0	2.3	3.2	3.5	3.6
체코							4.6	3.5	4.5	5.0
덴마크	1.4	1.0	1.2	1.4	2.2	1.7	2.3	3.3	3.9	3.6
핀란드	2.5	1.7	1.7	1.2	1.4	2.0	2.3	5.9	3.3	3.9
프랑스	1.8	2.1	1.8	2.1	1.9	2.2	2.1	3.1	2.4	3.0
독일	2.5	1.8	1.5	2.0	2.2	1.7	1.0	1.8	1.7	2.2
그리스	0.3	0.3	0.7	0.8	0.7	1.4	1.8	4.1	3.2	2.6
헝가리							1.8	2.2	2.1	2.8
아이슬란드	0.5	0.6	0.8	0.7	0.9	0.9	0.9	1.2	2.0	2.5
아일랜드	2.3	2.5	1.4	1.4	1.1	1.6	2.7	3.7	3.4	3.4
이탈리아	1.8	1.7	1.6	2.3	3.1	3.8	3.5	2.9	2.8	3.8
룩셈부르크	3.1	4.5	5.1	5.8	7.0	5.6	6.6	7.0	5.8	5.4
네덜란드	2.6	2.4	3.1	2.8	3.0	3.2	3.1	4.0	3.8	3.3
노르웨이	1.1	1.1	1.1	5.7	7.3	3.7	3.8	8.9	11.8	11.3
폴란드							2.8	2.4	2.5	2.7
포르투갈						2.2	2.4	3.9	2.8	3.7
슬로바키아								2.6	2.7	3.0
스페인	1.4	1.3	1.3	1.1	1.4	2.9	1.7	3.1	3.8	4.6
스웨덴	2.0	1.7	1.8	1.1	1.7	1.6	2.8	3.9	3.7	3.8
스위스	1.3	1.6	2.0	1.6	1.7	2.0	1.8	2.7	2.6	3.1
터키	0.5	0.6	0.6	0.6	1.1	1.0	1.1	1.8	1.7	1.6
영국	1.3	3.2	2.2	2.9	4.7	3.5	2.8	3.5	3.3	3.4
OECD 합계	2.2	2.3	2.2	2.3	2.6	2.6	2.7	3.6	3.7	3.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2009).

V. 유효한계세율 분석

1. 데이터와 변수

본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는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에서 만들어져서 OSIRIS에 제공되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138개국 49,000여개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이다. OSIRIS에는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이러한 전체 기업 수보다 작아지는데 이는 결손치와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세전이윤이 비결손치이고 납부세액이 양수인 관찰점은 107개국의 19,401개 기업이다.

2. 유효한계세율 분석 결과

본절에서는 Koester and Kormendi(1989)에서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한다. Koester and Kormendi(1989)는 국가별 한계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조세액을 GDP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GDP의 계수를 한계세율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세액을 세전이윤에 회귀분석하여 세전이윤의 계수값을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회귀방식은 OLS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소득세 납부금액이 양수인 기업들만으로 한정하였다. 세전이윤은 결손금이월을 시물레이션해서 교정하였다.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임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이 과거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세전이윤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법정세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효한계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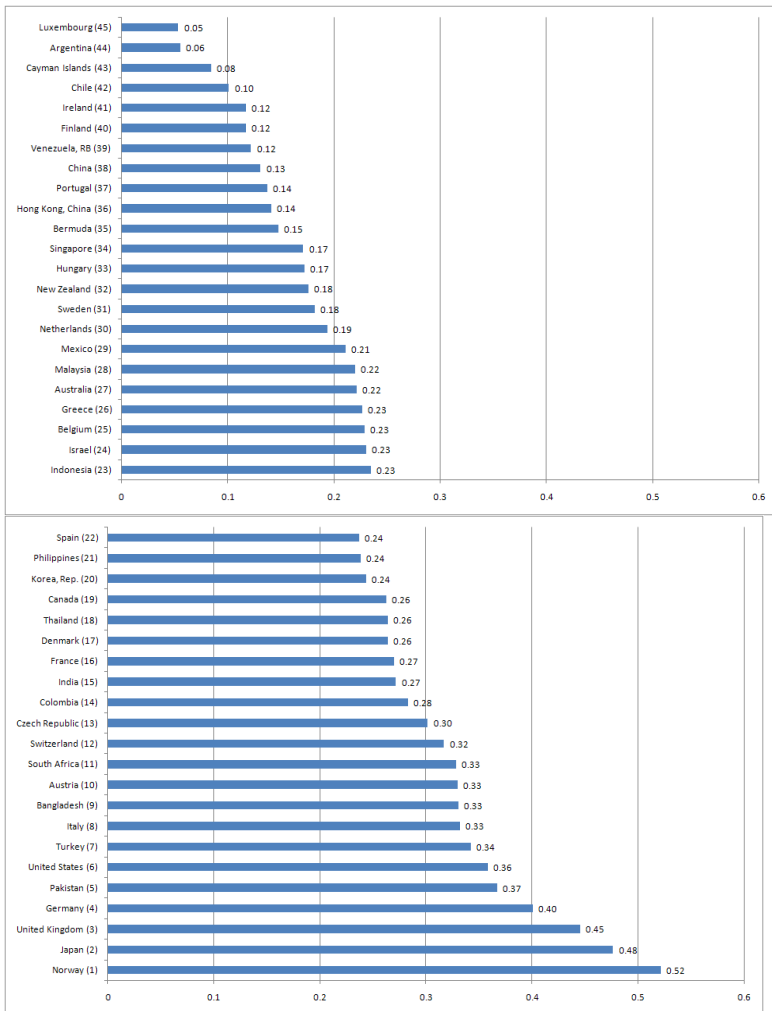
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는 경우, 전반적인 법정세율 이외에 각 부문별로 한계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전반적인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여 각 국가별 조세부담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유효한계세율이 각 부문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조세부담 내지는 유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효한계세율을 이용하면 세제의 각 측면에 의한 실질세율의 변화를 추정해 낼 수 있다.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이자비용을 비용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하며, 감가상각의 비용공제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감가상각 비용공제로 인한 유효한계세율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각 국가의 감가상각제도가 실질 세부담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다.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포함하기 이전과 포함한 이후의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여 그 차이를 감가상각으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로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분 추정에 있어서, 실효세율 감소분이 감가상각제도의 세부담 절감 효과와 더불어 투자액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국가에서 감가상각으로 인한 유효법인세율 감소분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감가상각이 너그럽지 못함에도 기인하지만 투자액 자체가 적었음에도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V-1]에서 [그림 V-2]은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을 각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24%로 표본에 포함된 주요 46개국 중 20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21%로 비교대상 72개국 중 40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효한계세율 추정치는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이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있어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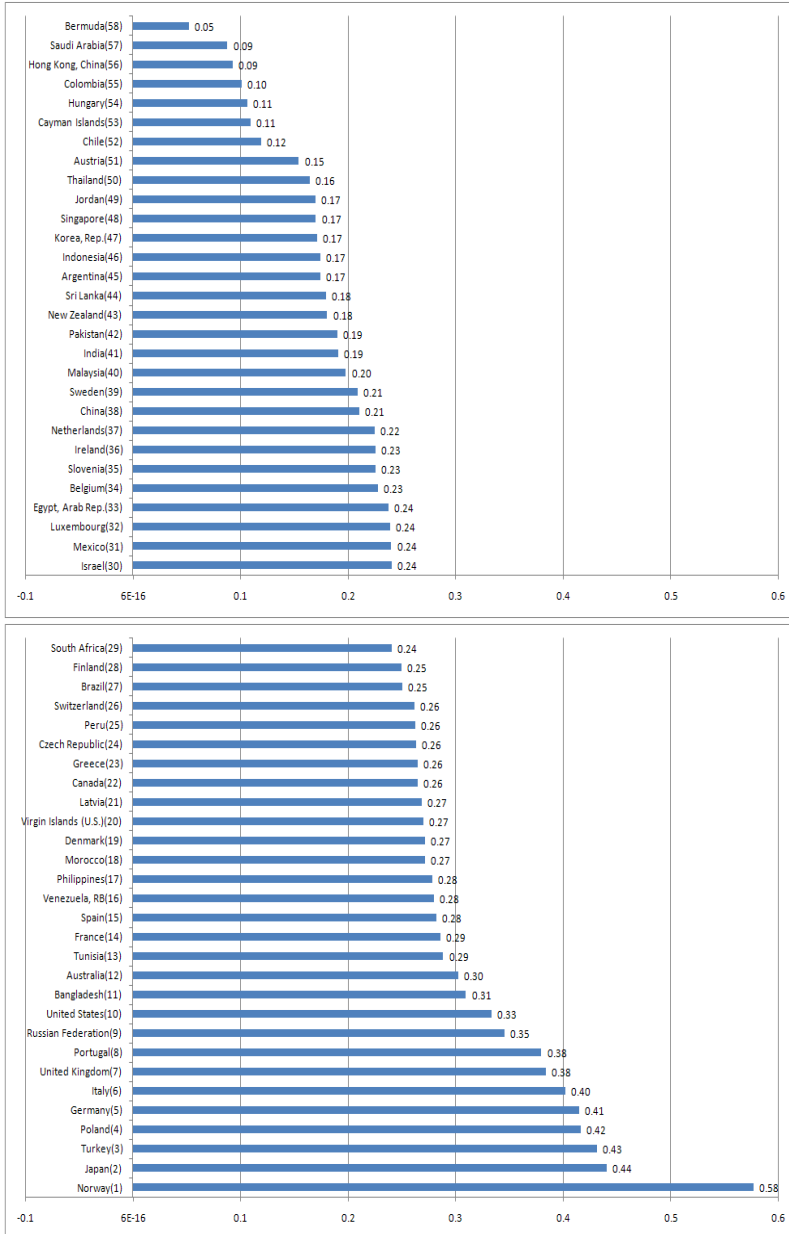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53

요르단 등의 중동국가, 헝가리,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유럽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유효한계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1]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199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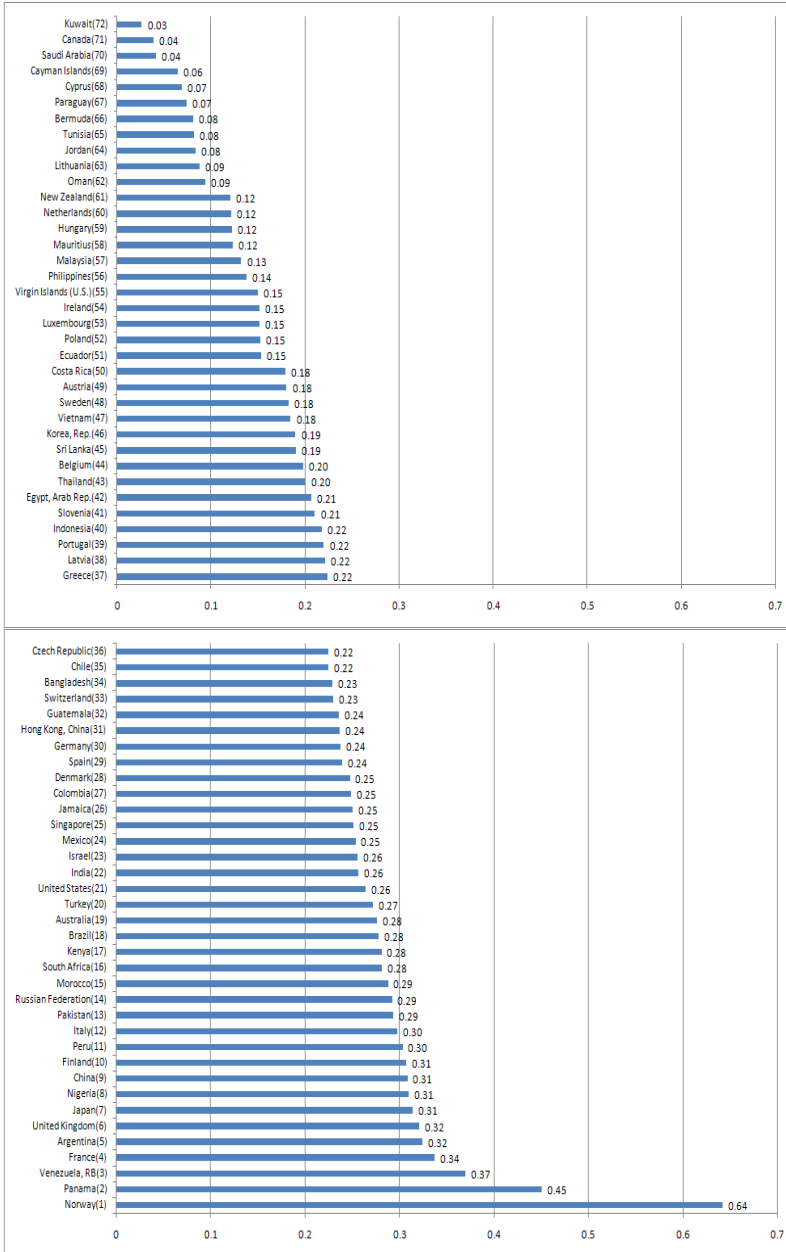


[그림 V-2]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199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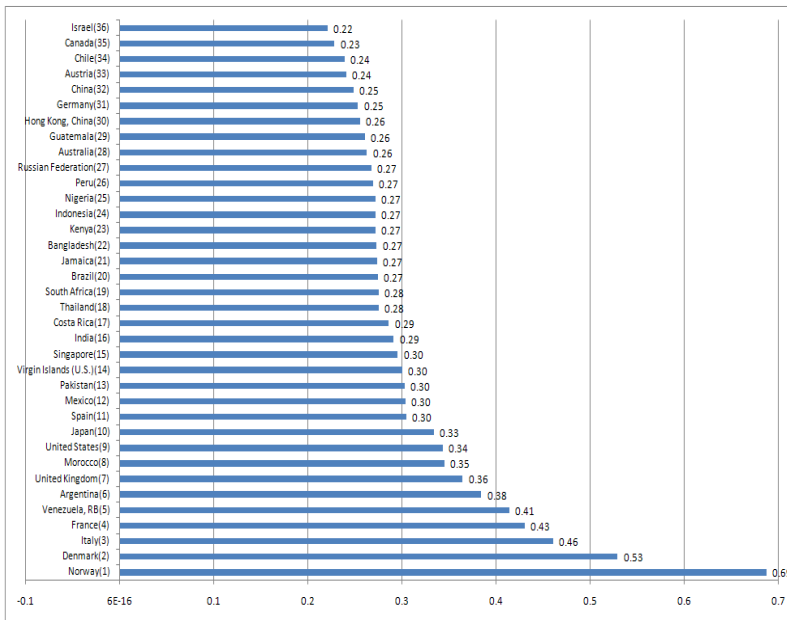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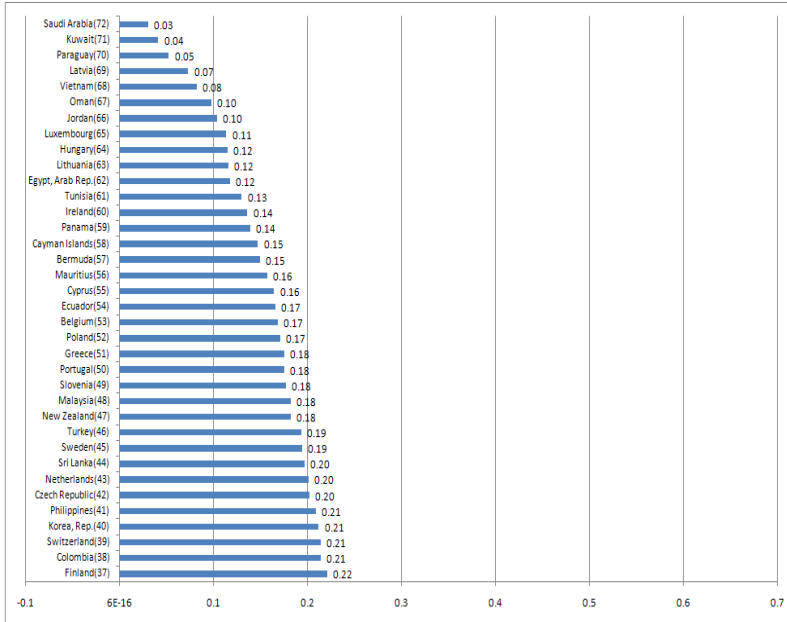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55

[그림 V-3]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200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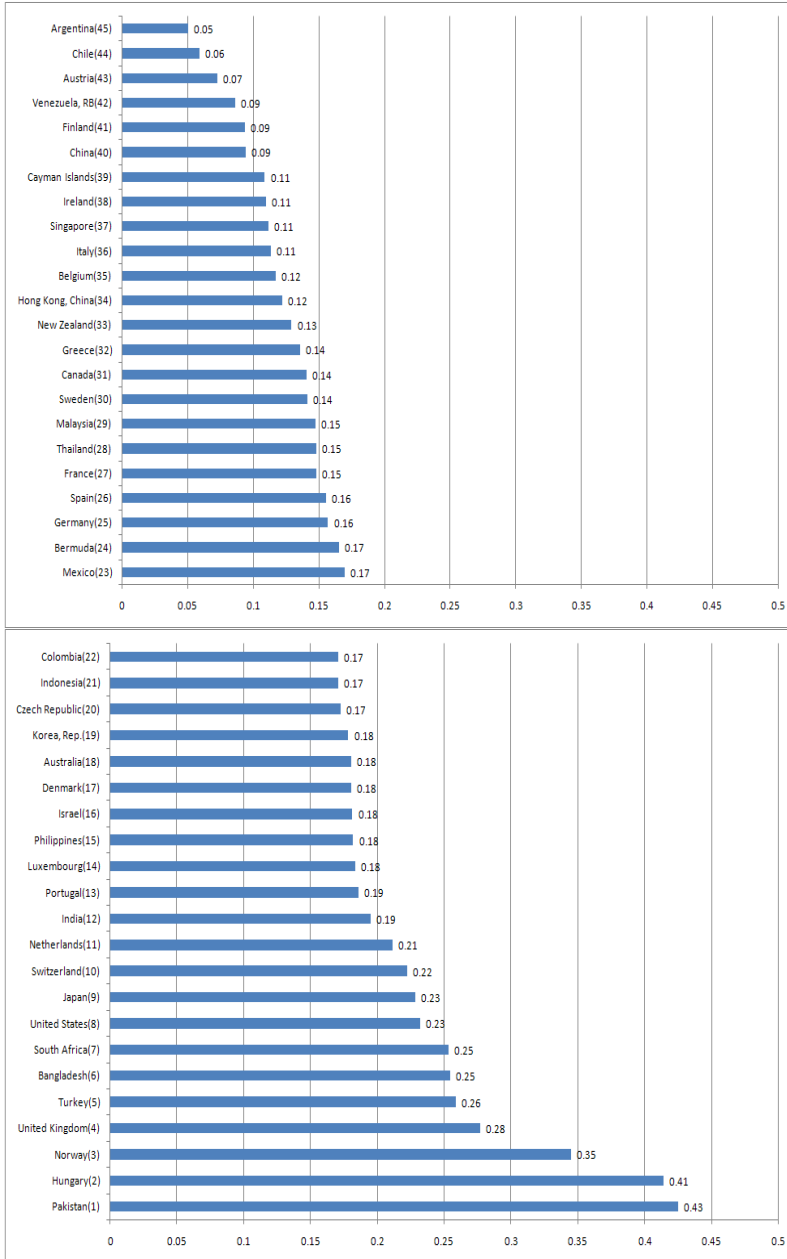


[그림 V-4] 유효한계세율(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200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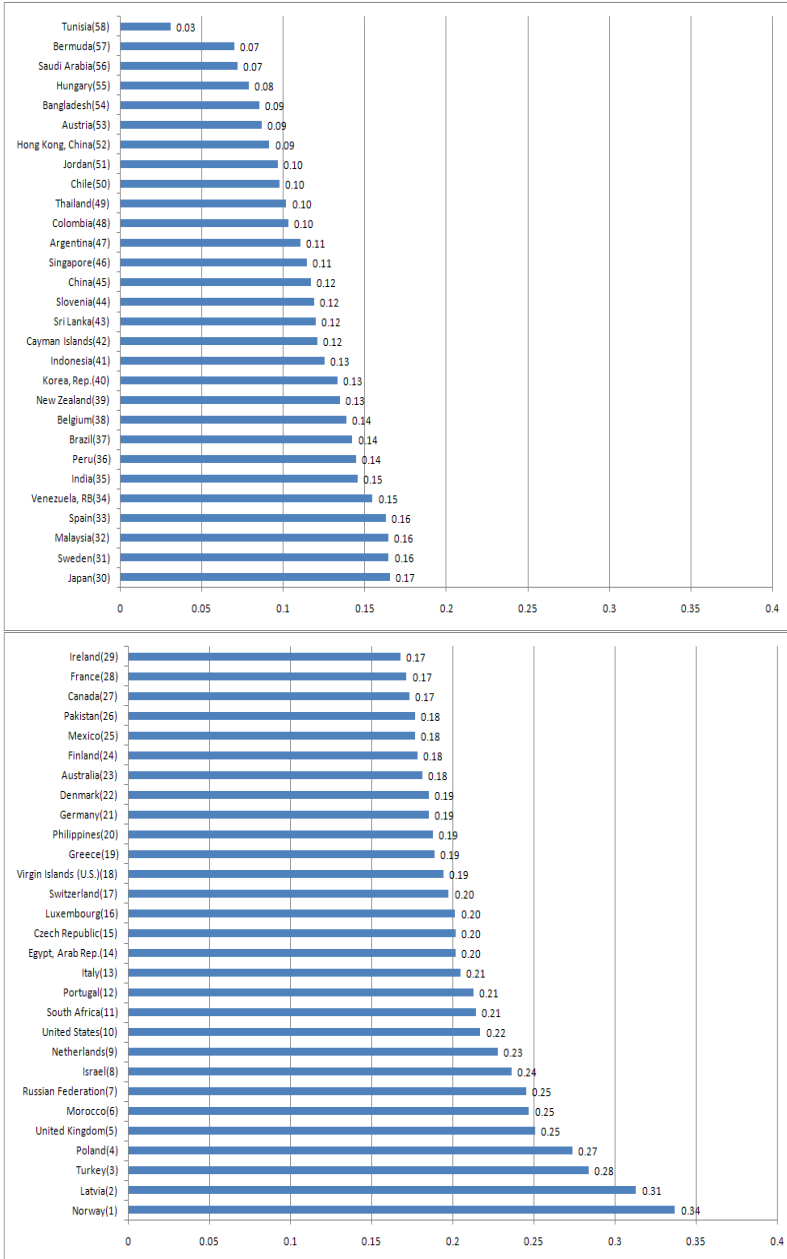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57

[그림 V-5]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199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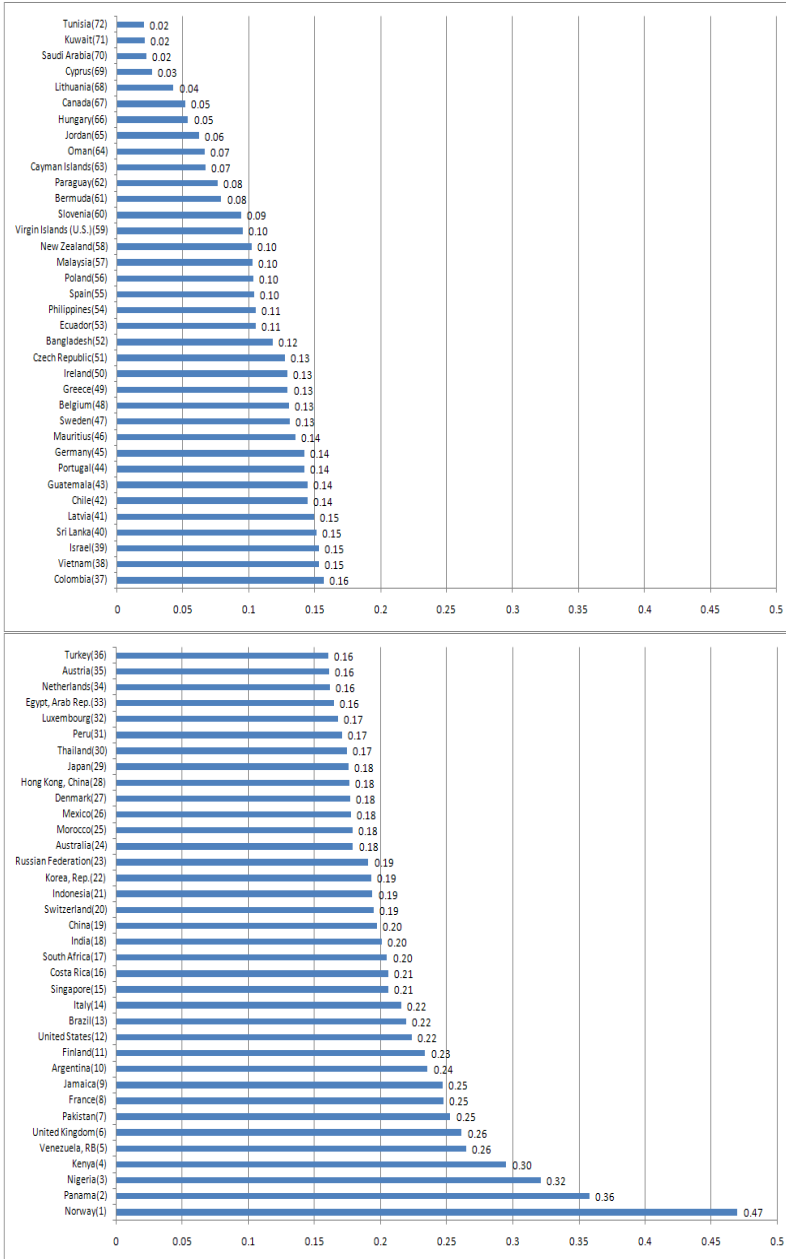


[그림 V-6]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199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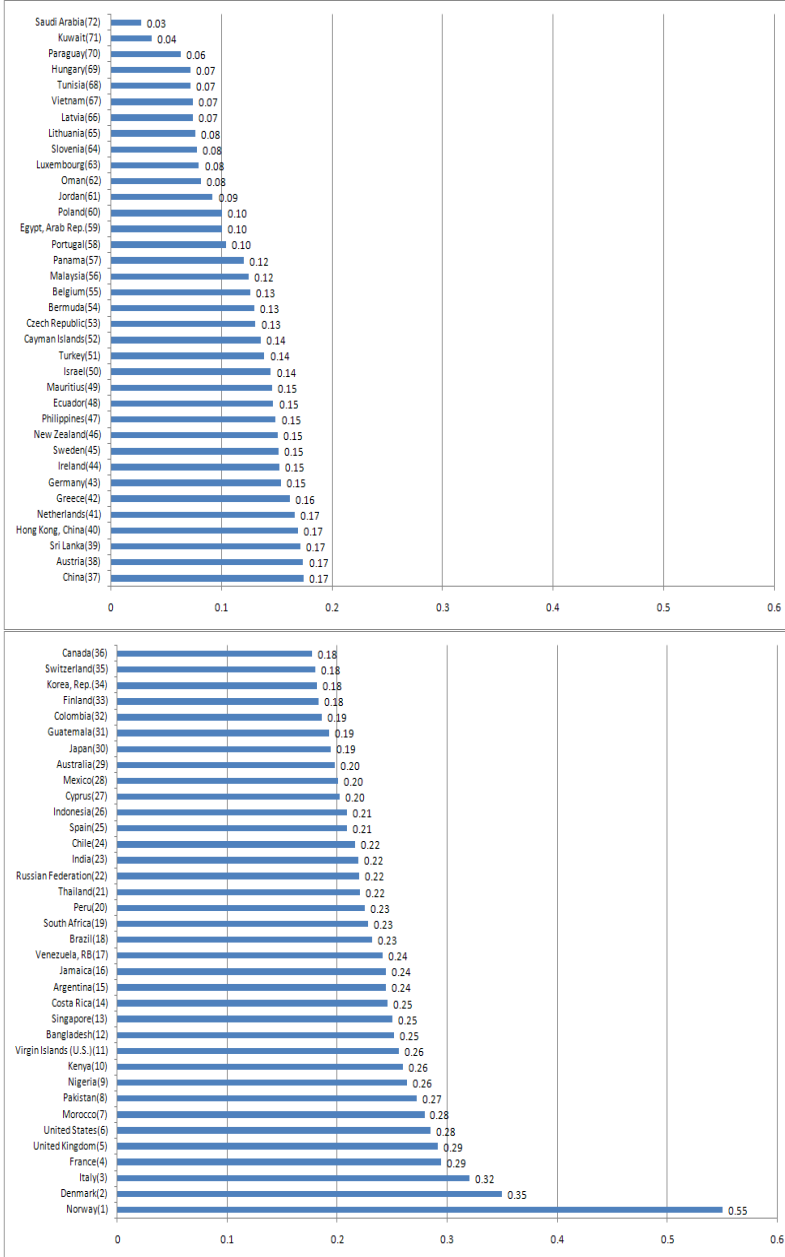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59

[그림 V-7]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2000년대 초반



[그림 V-8] 유효한계세율(감가상각 제외): 200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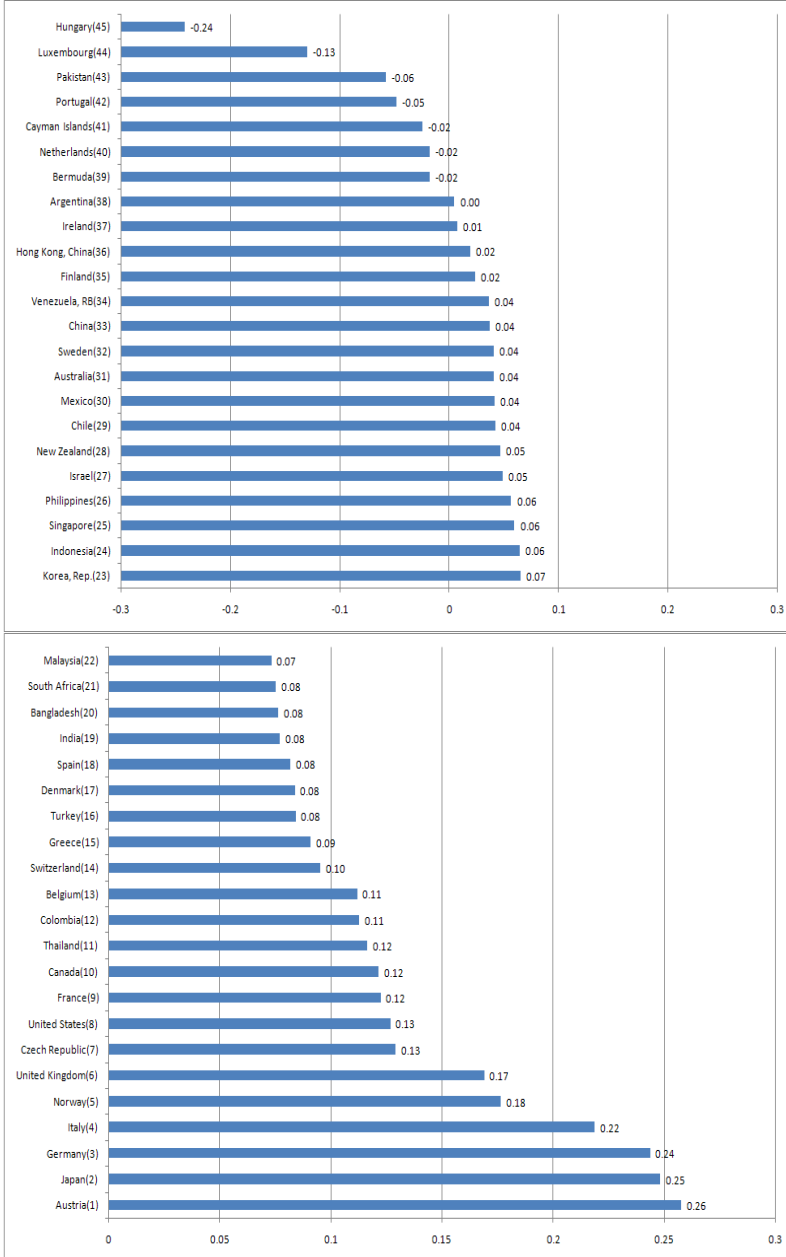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유효한계세율은 12%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낮은 유효한계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 국가로는 중국(13%), 포르투갈(14%), 홍콩(14%), 싱가포르(17%)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 비하여 한국은 약 24% 정도로 전체적으로 45개국 중 20위로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노르웨이는 52%, 일본은 48%, 영국은 45%, 독일은 40%, 미국은 36%로 추정되었다. 같은 아시아권에서 중국은 13%, 홍콩은 14%, 싱가포르는 17%, 태국 26%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자료를 사용하여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한 경우, 한국은 21%로 나타나고 전반적인 순위도 자료에 포함된 72개 국가 가운데 40번째로 유효한계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90년대 초반에 비교하여 다른 국가와 유사하거나 조금 빠르게 세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V-7]부터 [그림 V-10]까지는 감가상각 효과를 제외한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여 국가별·시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제도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고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감가상각 효과를 제외한 유효한계세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 부분을 계산을 하여 경감률을 [그림 V-11]부터 [그림 V-14]에 보고하였다.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 부분은 김학수(2009)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포함 유효세율 - 감가상각 미포함 감가상각)/감가상각 포함 유효세율 × 100'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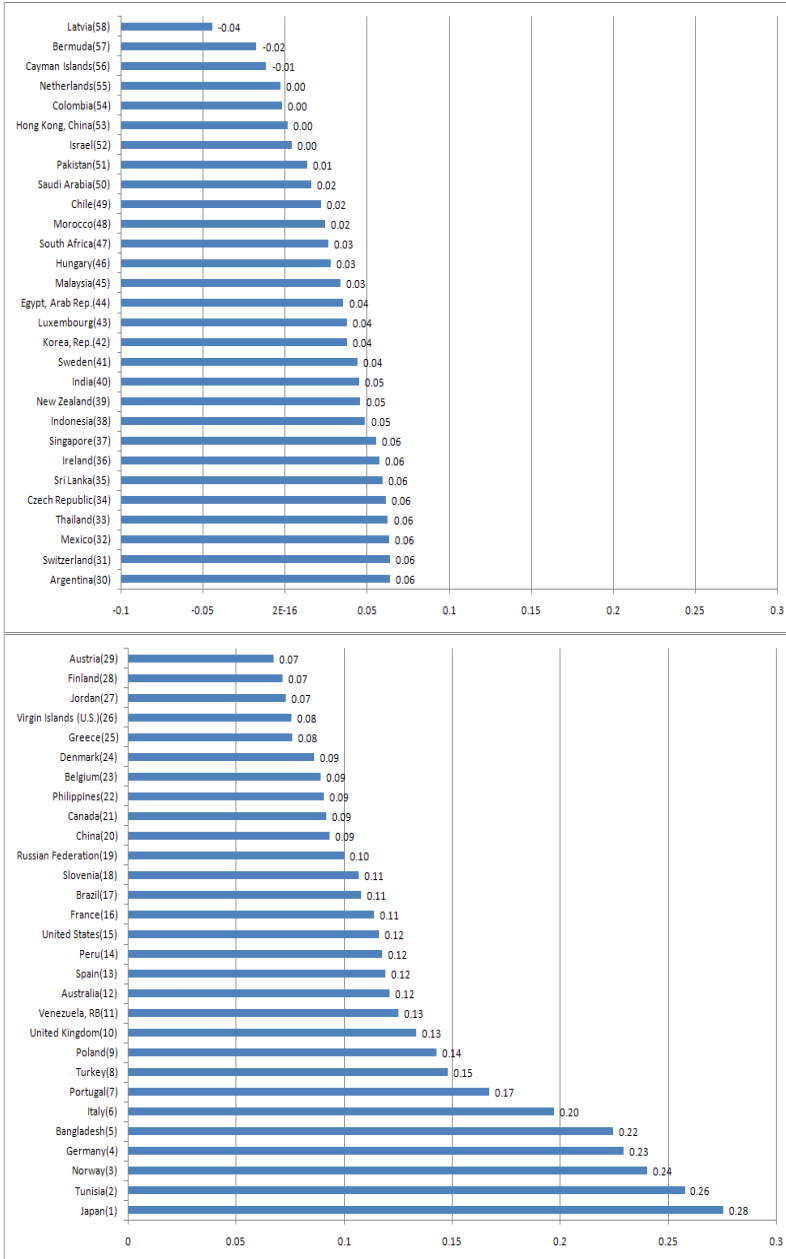
2000년대 후반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로 비교대상 72개국 가운데 49번째로 높은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 감가상각을 통한 감면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아주 많은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가장 경감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법인세 부담의 18% 가량이 감가상각으로 인해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도 감가상각을 통한 세율감면율이 14% 내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9] 감면율: 199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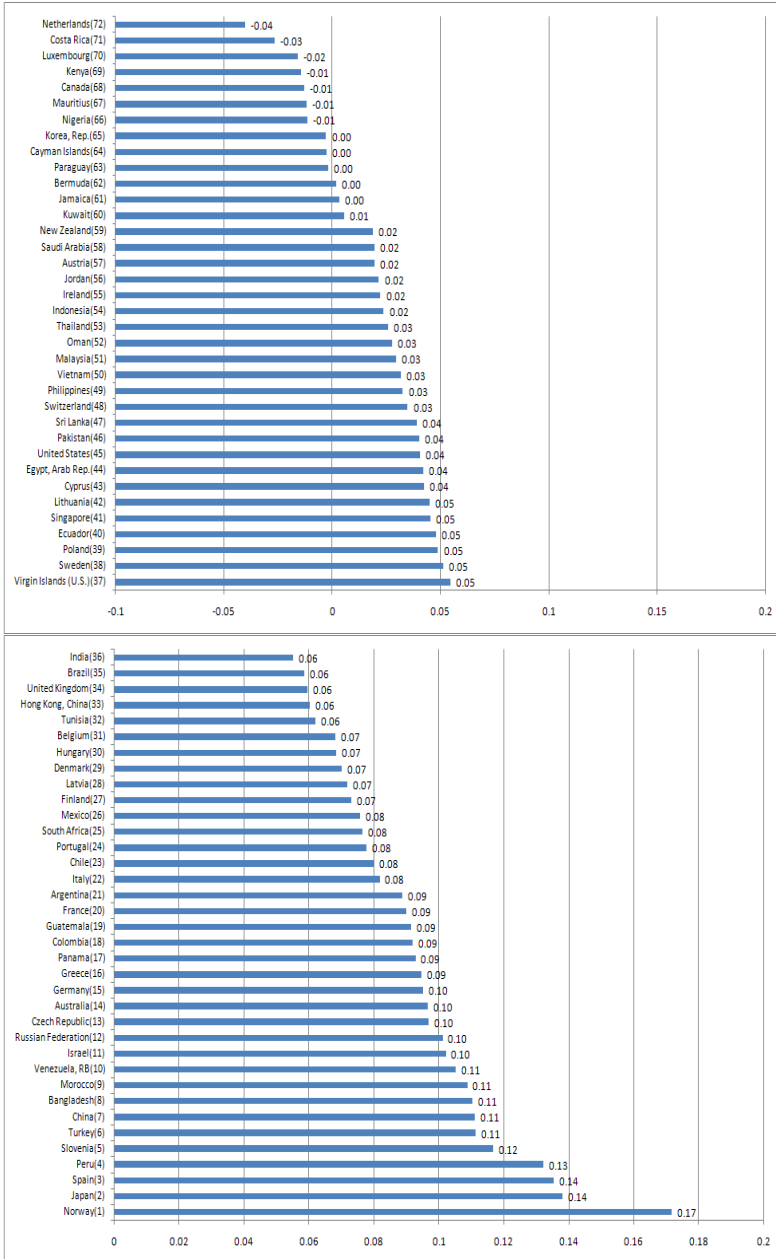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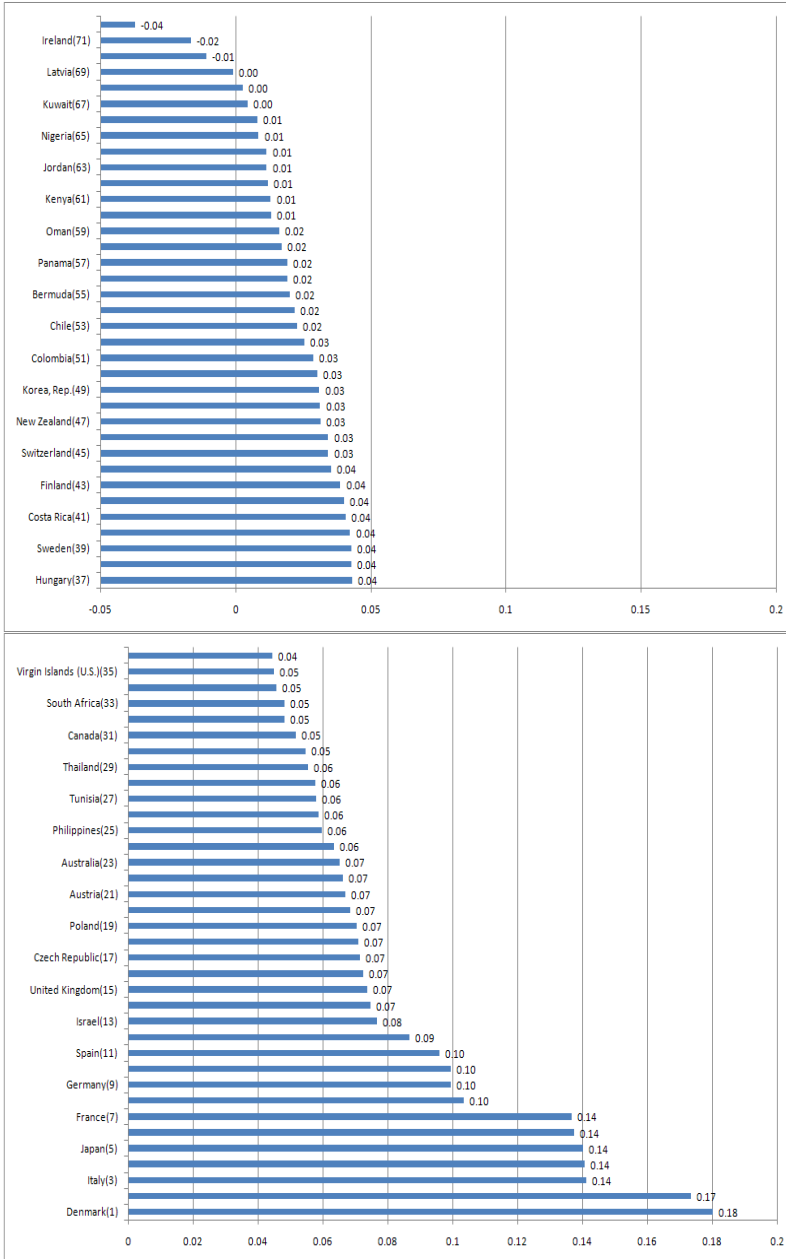
[그림 V-10] 감면율: 199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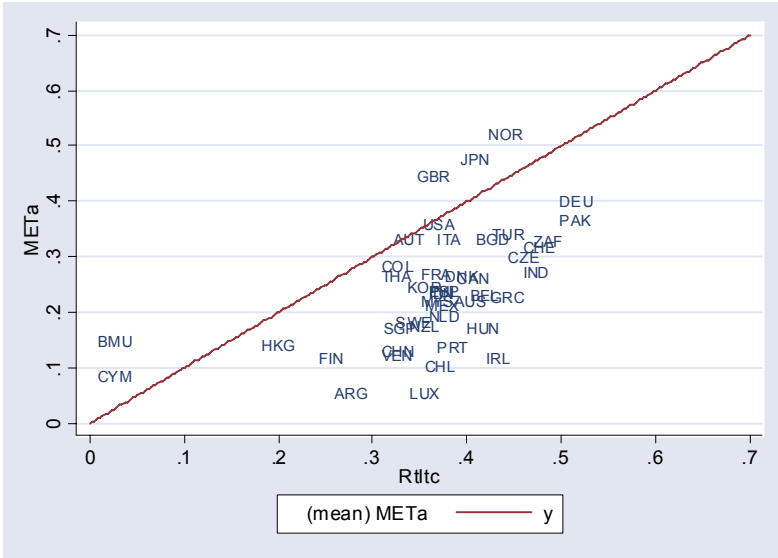
[그림 V-11] 감면율: 200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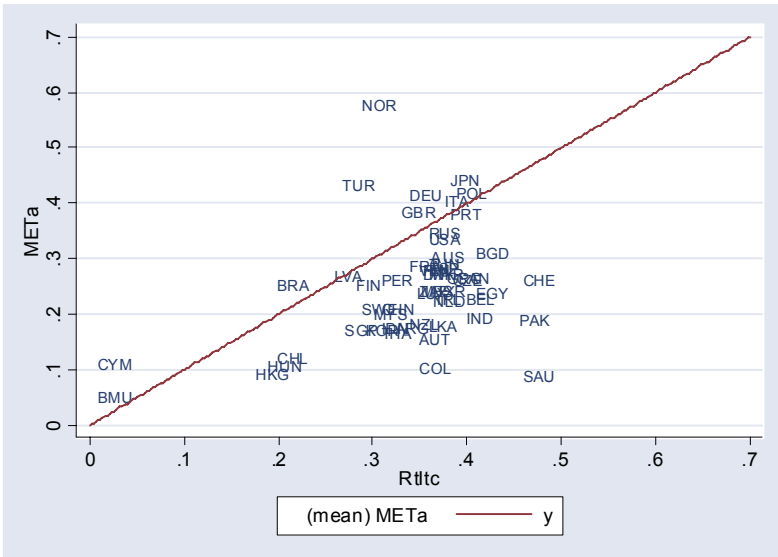
[그림 V-12] 감면율: 2000년대 후반



[그림 V-13]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199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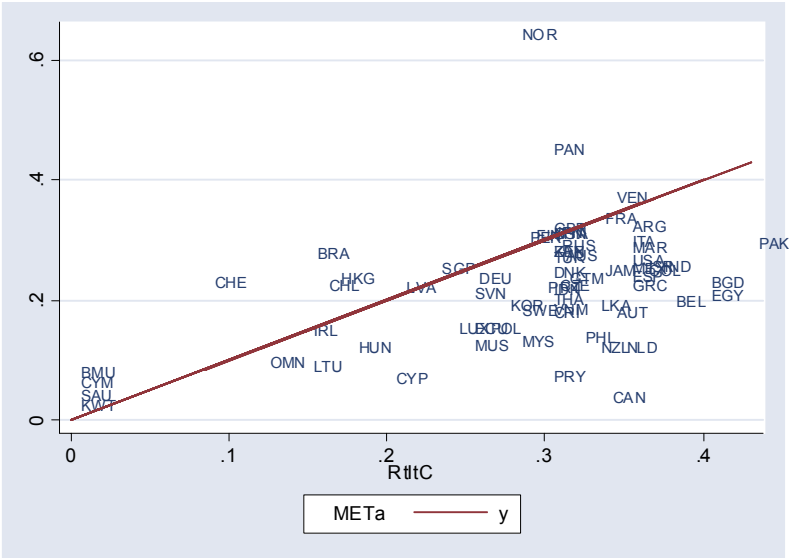


[그림 V-14]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199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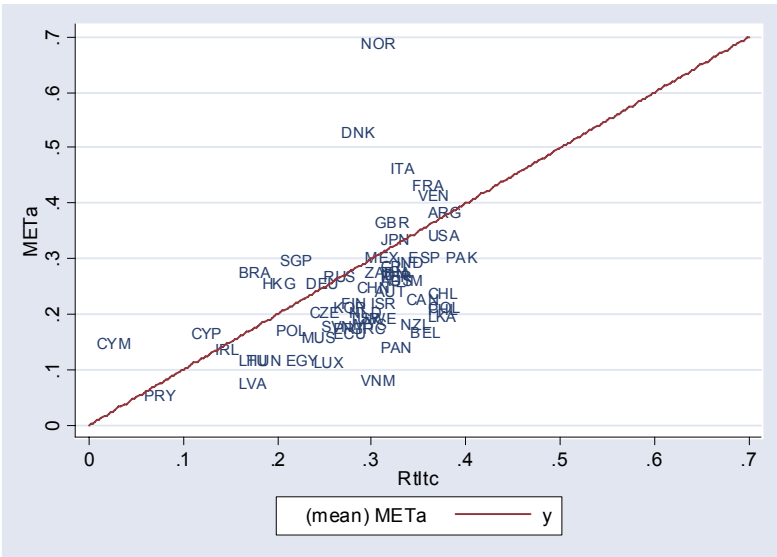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67

[그림 V-15]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2000년대 초반



[그림 V-16] 법정세율과 유효한계세율 추정치: 2000년대 후반



[그림 V-13]에서 [그림 V-16]에 걸쳐 유효한계세율을 법정세율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작업을 통하여 실제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이 법정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V-13]에서 [그림 V-16]에 걸쳐 추정된 유효한계세율과 법정세율이 일치한다면 각 국가에 대한 관측치들은 45도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다소간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은 법정세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모든 국가들의 관측치가 45도선상에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5도선상의 윗부분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유효한계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정세율자료가 중앙정부의 세금부담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의 형태로 존재하는 조세부담이 유효한계세율의 계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조세제도에 있어서 각종 예외제도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법정세율에 비하여 유효한계세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에 45도선상의 아랫 부분에 관측치들이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을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을 넘어 유효한계세율이 부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연구의 장점이 될 것이다.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이 법정세율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또는 차이를 지니는지를 통하여 국가별 조세제도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는 측면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유효한계세율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살펴보았지만, 그 이외에도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을 통하여 조세부담 또는 지원이 부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그림 V-17]에서 [그림 V-21]은 주요 국가의 산업별 유효한계세율 추정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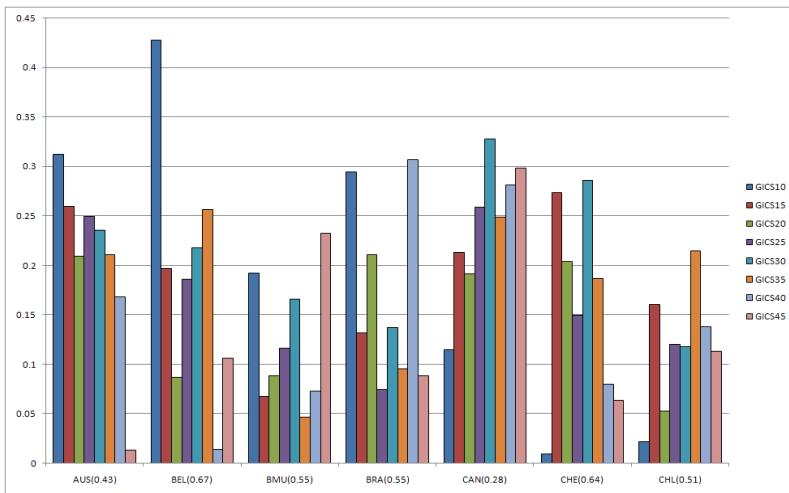
[그림 V-17]에서 [그림 V-21]은 먼저 모든 산업에 대하여 유효한

V. 유효한계세율 분석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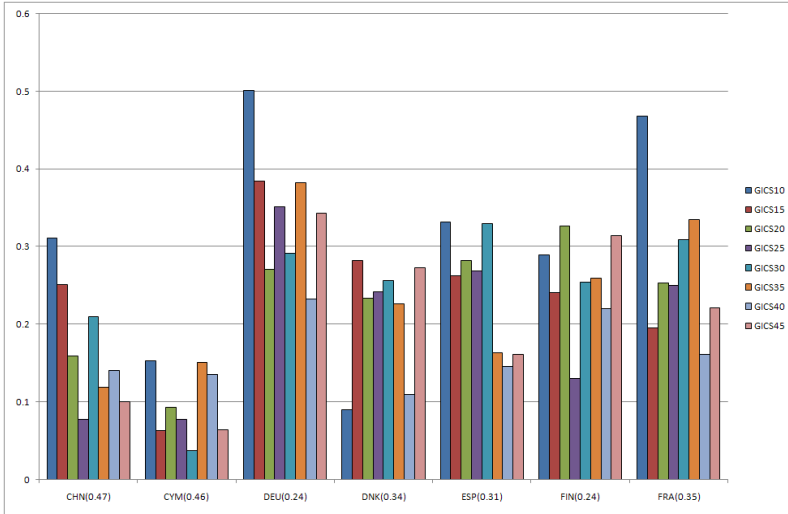
계세율 추정치를 제공하고, (1) GSIC10: Energy; (2) GSIC15: Materials; (3) GSIC20: Industrials; (4) GSIC25: Consumer Discretionary; (5) GSIC30: Consumer Staples; (6) GSIC35: Health Care; (7) GSIC40: Financials; (8) GSIC45: Information Technology; (9) GSIC50: Telecommunication Services; (10) GSIC55: Utilities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각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각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추정치가 비슷한 것이고, 각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다른 경우는 부문별로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즉, 부문별로 세율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세율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높은 부담이 지워지거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V-17]에서 [그림 V-21]의 각 국가에 대하여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나타낸다.

[그림 V-17]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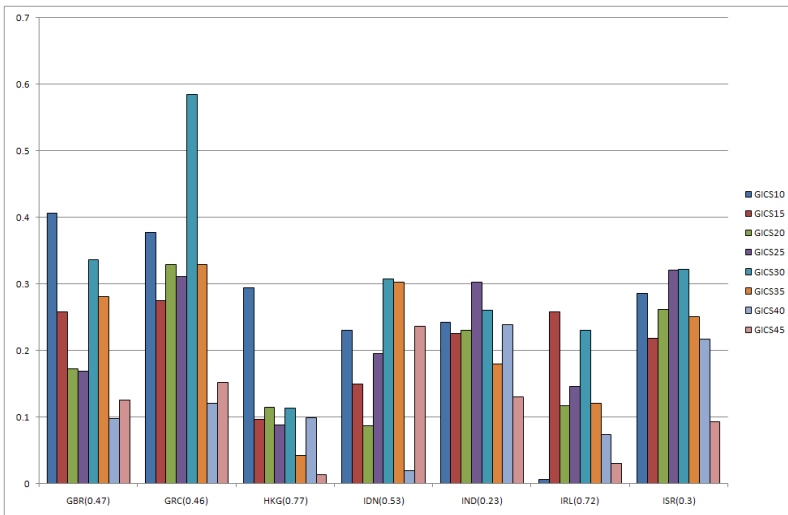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버뮤다,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칠레



[그림 V-18]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중국, 케이맨제도,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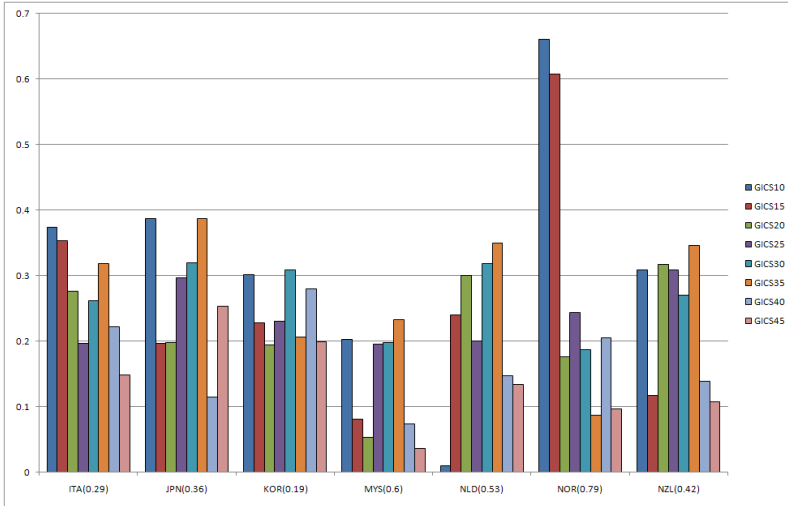


[그림 V-19]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영국,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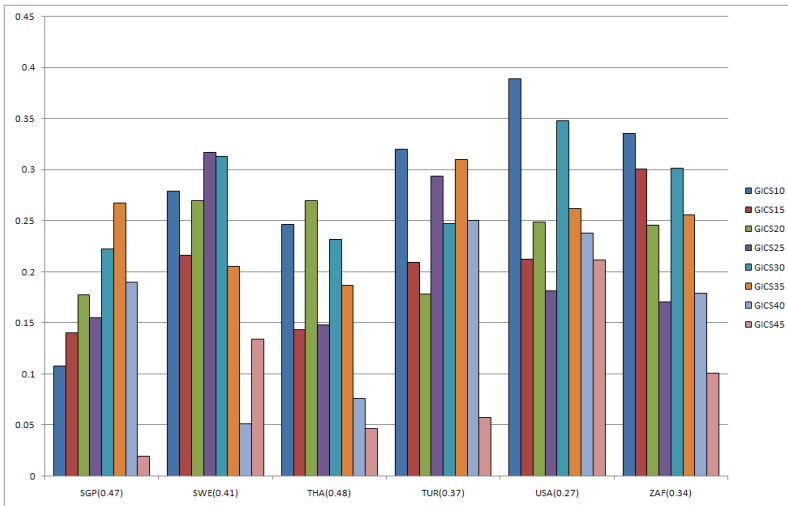


V. 유효한계세율 분석 71

[그림 V-20]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림 V-21] 부문별 유효한계세율: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 터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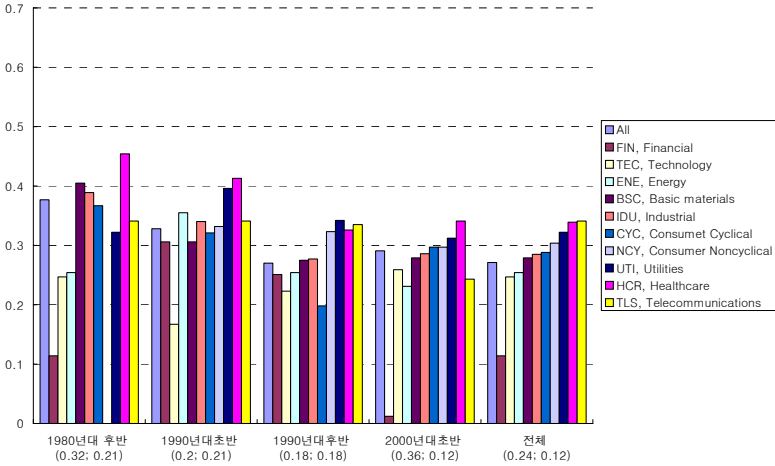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세율이 부문별로 고르게 나타난다.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율이 부문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교적 고른 세율의 부문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추정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의 값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0.19 정도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의 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기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자료에 있어서는 금융부문과 테크놀로지 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보건·유틸리티 등의 부문에서 유효한계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기초소재·산업·소비재 등의 부문에서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문별 세율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경우, 금융부문과 테크놀로지 부문이 비교적 혜택 내지는 지원을 받는 데 비하여, 통신, 보건, 유틸리티 등의 부문이 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 차이가 시기별로도 유의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V-22]는 한국의 산업별 유효한계세율 추정치를 각 시기별로 보여 주고 있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부문이 특히 낮은 유효한계세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림 V-22]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의 값을 나타내는데,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0.24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부문을 제외할 경우 그 값은 0.12 정도로 나타난다. 즉 전체 표본기간에 대하여 부문별 한계세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금융부문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림 V-22]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 한국(시계열자료)



주: 괄호안의 첫 번째 숫자는 전체 10개 산업에 대해서 계산된 추정세율의 CV이고, 두 번째 숫자는 금융분야를 제외한 9개 산업에 대해서 계산된 추정세율의 CV이다.

금융부문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도 조세부담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초반과 1990년 후반의 유효한계세율은 다른 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유효한계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실제 조세부담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일종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결과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부문별 유효한계세율의 격차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즉, 1980년대 후반의 경우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각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높이의 차이가 1990년대 들어 감소하고 2000년에 들어서는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효한계

세율의 전체적인 수준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효한계세율이 가지는 부문별 차이의 감소는 변이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경우 변이계수는 전체 부문에 대하여 0.32이지만, 1990년대 초반의 경우 0.2로, 1990년대 후반의 경우 0.1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변이계수는 0.36으로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것은 주로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문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역시 변이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의 경우, 금융부문을 제외한 전체산업의 변이계수는 0.21, 1990년대 초반의 경우는 0.21, 1990년대 후반의 경우는 0.18, 2000년대 초반의 경우는 0.1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다.

〈표 V-1〉은 1980년대부터 국가별·시기별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 법정한계세율 및 감면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은 각 국가별로 두가지 유효한계세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효한계세율은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세법상의 모든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한 유효한계세율이며, 두 번째 유효한계세율은 세법상 공제 중 감가상각으로 인한 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한 유효한계세율이다. 감면비율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효한계세율로부터 감가상각의 회계상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를 보여준다. 즉, 감면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상 감가상각의 처리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V-1〉 국가별·시기별 한계세율 및 감면비율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6	0.17	0.32	0.3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5	0.11	0.24	0.24
	법정한계세율		0.25	0.32	0.35	0.35
	감면율		0.00	0.06	0.09	0.14
호주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9	0.22	0.30	0.28	0.2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9	0.18	0.18	0.18	0.20
	법정한계세율	0.46	0.38	0.35	0.31	0.30
	감면율	0.09	0.04	0.12	0.10	0.07
오스트리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56	0.33	0.15	0.18	0.24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7	0.07	0.09	0.16	0.17
	법정한계세율	0.30	0.31	0.34	0.34	0.30
	감면율	0.49	0.26	0.07	0.02	0.07
방글라데시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3	0.31	0.23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5	0.09	0.12	0.25
	법정한계세율		0.40	0.40	0.40	
	감면율		0.08	0.22	0.11	0.02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벨기에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8	0.23	0.23	0.20	0.1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4	0.12	0.14	0.13	0.13
	법정한계세율	0.44	0.39	0.39	0.38	0.33
	감면율	0.13	0.11	0.09	0.07	0.04
버뮤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8	0.15	0.05	0.08	0.15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9	0.17	0.07	0.08	0.13
	법정한계세율	0.00	0.00	0.00	0.00	
	감면율	-0.01	-0.02	-0.02	0.00	0.02
브라질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5	0.28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4	0.22	0.23
	법정한계세율			0.19	0.15	0.15
	감면율			0.11	0.06	0.04
캐나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57	0.26	0.26	0.04	0.23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43	0.14	0.17	0.05	0.18
	법정한계세율	0.44	0.38	0.38	0.34	0.33
	감면율	0.14	0.12	0.09	-0.01	0.05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케이맨 제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4	0.08	0.11	0.06	0.15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3	0.11	0.12	0.07	0.14
	법정한계세율	0.00	0.00	0.00	0.00	0.00
	감면율	0.01	-0.02	-0.01	0.00	0.01
칠레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8	0.10	0.12	0.22	0.24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2	0.06	0.10	0.14	0.22
	법정한계세율	0.33	0.35	0.19	0.16	0.35
	감면율	-0.04	0.04	0.02	0.08	0.02
중국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3	0.21	0.31	0.25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9	0.12	0.20	0.17
	법정한계세율		0.30	0.30	0.30	0.28
	감면율		0.04	0.09	0.11	0.07
콜롬비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8	0.10	0.25	0.21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7	0.10	0.16	0.19
	법정한계세율		0.30	0.34	0.36	0.35
	감면율		0.11	0.00	0.09	0.03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코스타리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8	0.29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1	0.25
	법정한계세율				0.30	0.30
	감면율				-0.03	0.04
사이프러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7	0.1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3	0.20
	법정한계세율				0.20	0.10
	감면율				0.04	-0.04
체코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0	0.26	0.22	0.2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7	0.20	0.13	0.13
	법정한계세율		0.44	0.38	0.30	0.23
	감면율		0.13	0.06	0.10	0.07
덴마크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9	0.26	0.27	0.25	0.53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6	0.18	0.19	0.18	0.35
	법정한계세율	0.48	0.37	0.34	0.30	0.26
	감면율	0.13	0.08	0.09	0.07	0.18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에콰도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5	0.1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1	0.15
	법정한계세율				0.25	0.25
	감면율				0.05	0.02
이집트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4	0.21	0.12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0	0.16	0.10
	법정한계세율			0.40	0.40	0.20
	감면율			0.04	0.04	0.02
핀란드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1	0.12	0.25	0.31	0.22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8	0.09	0.18	0.23	0.18
	법정한계세율	0.35	0.23	0.27	0.29	0.26
	감면율	0.03	0.02	0.07	0.07	0.04
프랑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41	0.27	0.29	0.34	0.43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6	0.15	0.17	0.25	0.29
	법정한계세율	0.45	0.34	0.33	0.33	0.33
	감면율	0.15	0.12	0.11	0.09	0.14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독일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57	0.40	0.41	0.24	0.25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8	0.16	0.19	0.14	0.15
	법정한계세율	0.56	0.49	0.33	0.25	0.22
	감면율	0.29	0.24	0.23	0.10	0.10
그리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5	0.23	0.26	0.22	0.1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7	0.14	0.19	0.13	0.16
	법정한계세율	0.48	0.42	0.37	0.35	0.27
	감면율	0.18	0.09	0.08	0.09	0.01
과테말라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4	0.2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4	0.19
	법정한계세율				0.31	0.31
	감면율				0.09	0.07
홍콩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3	0.14	0.09	0.24	0.2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1	0.12	0.09	0.18	0.17
	법정한계세율	0.18	0.17	0.17	0.17	0.18
	감면율	0.02	0.02	0.00	0.06	0.09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헝가리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7	0.11	0.12	0.12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41	0.08	0.05	0.07
	법정한계세율		0.39	0.18	0.18	0.16
	감면율		-0.24	0.03	0.07	0.04
인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5	0.27	0.19	0.26	0.29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2	0.19	0.15	0.20	0.22
	법정한계세율	0.51	0.45	0.39	0.37	0.32
	감면율	0.13	0.08	0.05	0.06	0.07
인도네시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0	0.23	0.17	0.22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8	0.17	0.13	0.19	0.21
	법정한계세율	0.35	0.35	0.30	0.30	0.30
	감면율	-0.08	0.06	0.05	0.02	0.06
아일랜드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5	0.12	0.23	0.15	0.14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7	0.11	0.17	0.13	0.15
	법정한계세율	0.49	0.41	0.36	0.15	0.13
	감면율	0.08	0.01	0.06	0.02	-0.02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이스라엘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6	0.23	0.24	0.26	0.22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9	0.18	0.24	0.15	0.14
	법정한계세율			0.36	0.36	0.29
	감면율	0.07	0.05	0.00	0.10	0.08
이탈리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2	0.33	0.40	0.30	0.4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1	0.11	0.21	0.22	0.32
	법정한계세율	0.36	0.36	0.37	0.35	0.31
	감면율	0.21	0.22	0.20	0.08	0.14
자메이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5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5	0.24
	법정한계세율				0.33	
	감면율				0.00	0.03
일본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54	0.48	0.44	0.31	0.33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4	0.23	0.17	0.18	0.19
	법정한계세율	0.42	0.38	0.37	0.30	0.30
	감면율	0.20	0.25	0.28	0.14	0.14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요르단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7	0.08	0.1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0	0.06	0.09
	법정한계세율					
	감면율			0.07	0.02	0.01
케냐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8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0	0.26
	법정한계세율				0.30	
	감면율				-0.01	0.01
한국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49	0.24	0.17	0.19	0.21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9	0.18	0.13	0.19	0.18
	법정한계세율	0.30	0.33	0.28	0.27	0.25
	감면율	0.21	0.07	0.04	0.00	0.03
쿠웨이트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3	0.04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2	0.04
	법정한계세율				0.00	
	감면율				0.01	0.00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라트비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7	0.22	0.0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1	0.15	0.07
	법정한계세율			0.25	0.21	0.15
	감면율			-0.04	0.07	0.00
리투아니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9	0.12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4	0.08
	법정한계세율				0.15	0.15
	감면율				0.05	0.04
룩셈부르크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0	0.05	0.24	0.15	0.11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7	0.18	0.20	0.17	0.08
	법정한계세율	0.34	0.33	0.34	0.24	0.23
	감면율	-0.06	-0.13	0.04	-0.02	0.03
말레이시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2	0.22	0.20	0.13	0.1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3	0.15	0.16	0.10	0.12
	법정한계세율	0.39	0.34	0.29	0.28	0.27
	감면율	0.09	0.07	0.03	0.03	0.06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모리셔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2	0.1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4	0.15
	법정한계세율				0.25	0.22
	감면율				-0.01	0.01
멕시코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7	0.21	0.24	0.25	0.3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4	0.17	0.18	0.18	0.20
	법정한계세율	0.38	0.35	0.34	0.35	0.29
	감면율	0.13	0.04	0.06	0.08	0.10
모로코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7	0.29	0.35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5	0.18	0.28
	법정한계세율			0.35	0.35	
	감면율			0.02	0.11	0.07
네덜란드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5	0.19	0.22	0.12	0.2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7	0.21	0.23	0.16	0.17
	법정한계세율	0.41	0.35	0.36	0.35	0.27
	감면율	-0.03	-0.02	0.00	-0.04	0.04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뉴질랜드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6	0.18	0.18	0.12	0.1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3	0.13	0.13	0.10	0.15
	법정한계세율	0.43	0.33	0.33	0.33	0.32
	감면율	0.03	0.05	0.05	0.02	0.03
나이지리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1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2	0.26
	법정한계세율				0.30	
	감면율				-0.01	0.01
노르웨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4	0.52	0.58	0.64	0.69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3	0.35	0.34	0.47	0.55
	법정한계세율	0.51	0.41	0.28	0.28	0.28
	감면율	0.11	0.18	0.24	0.17	0.14
오만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9	0.1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7	0.08
	법정한계세율				0.12	
	감면율				0.03	0.02

V. 유효한계세율 분석 87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파키스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7	0.19	0.29	0.3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43	0.18	0.25	0.27
	법정한계세율		0.49	0.45	0.43	0.37
	감면율		-0.06	0.01	0.04	0.03
파나마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45	0.14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6	0.12
	법정한계세율				0.30	0.30
	감면율				0.09	0.02
파라과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7	0.05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8	0.06
	법정한계세율				0.30	0.05
	감면율				0.00	-0.01
페루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6	0.30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4	0.17	0.23
	법정한계세율			0.30	0.29	0.30
	감면율			0.12	0.13	0.04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필리핀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3	0.24	0.28	0.14	0.21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1	0.18	0.19	0.11	0.15
	법정한계세율	0.35	0.35	0.34	0.32	0.35
	감면율	0.02	0.06	0.09	0.03	0.06
폴란드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42	0.15	0.1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7	0.10	0.10
	법정한계세율			0.38	0.26	0.19
	감면율			0.14	0.05	0.07
포르투갈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4	0.38	0.22	0.1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9	0.21	0.14	0.10
	법정한계세율		0.36	0.37	0.30	0.25
	감면율		-0.05	0.17	0.08	0.07
러시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5	0.29	0.27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5	0.19	0.22
	법정한계세율			0.35	0.31	0.24
	감면율			0.10	0.10	0.05

V. 유효한계세율 분석 89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사우디 아라비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09	0.04	0.03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7	0.02	0.03
	법정한계세율			0.45	0.00	
	감면율			0.02	0.02	0.00
싱가포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3	0.17	0.17	0.25	0.3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7	0.11	0.11	0.21	0.25
	법정한계세율	0.36	0.30	0.26	0.23	0.19
	감면율	0.06	0.06	0.06	0.05	0.05
슬로베니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3	0.21	0.1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2	0.09	0.08
	법정한계세율				0.25	0.24
	감면율			0.11	0.12	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3	0.33	0.24	0.28	0.2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0	0.25	0.21	0.20	0.23
	법정한계세율	0.50	0.46	0.34	0.30	0.29
	감면율	0.03	0.08	0.03	0.08	0.05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스페인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5	0.24	0.28	0.24	0.3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1	0.16	0.16	0.10	0.21
	법정한계세율	0.35	0.35	0.35	0.35	0.33
	감면율	0.04	0.08	0.12	0.14	0.10
스리랑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8	0.19	0.2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2	0.15	0.17
	법정한계세율			0.35	0.33	0.35
	감면율			0.06	0.04	0.03
스웨덴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6	0.18	0.21	0.18	0.19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5	0.14	0.16	0.13	0.15
	법정한계세율	0.52	0.32	0.28	0.28	0.28
	감면율	0.11	0.04	0.04	0.05	0.04
스위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40	0.32	0.26	0.23	0.21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8	0.22	0.20	0.19	0.18
	법정한계세율	0.29	0.45	0.45	0.09	
	감면율	0.12	0.10	0.06	0.03	0.03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태국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3	0.26	0.16	0.20	0.2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9	0.15	0.10	0.17	0.22
	법정한계세율	0.30	0.30	0.30	0.30	0.30
	감면율	0.14	0.12	0.06	0.03	0.06
튀니지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9	0.08	0.13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3	0.02	0.07
	법정한계세율			0.35		
	감면율			0.26	0.06	0.06
터키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54	0.34	0.43	0.27	0.19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5	0.26	0.28	0.16	0.14
	법정한계세율	0.46	0.42	0.26	0.30	0.27
	감면율	0.20	0.08	0.15	0.11	0.05
영국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51	0.45	0.38	0.32	0.36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35	0.28	0.25	0.26	0.29
	법정한계세율	0.38	0.34	0.32	0.30	0.30
	감면율	0.17	0.17	0.13	0.06	0.07

〈표 V-1〉의 계속

국가명	항목	시기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전반	19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전반	2000 년대 후반
미국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39	0.36	0.33	0.26	0.34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25	0.23	0.22	0.22	0.28
	법정한계세율	0.40	0.34	0.35	0.35	0.35
	감면율	0.14	0.13	0.12	0.04	0.06
베네수엘라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2	0.28	0.37	0.41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09	0.15	0.26	0.24
	법정한계세율		0.30	0.34	0.34	0.34
	감면율		0.04	0.13	0.11	0.17
베트남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18	0.08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5	0.07
	법정한계세율				0.30	0.28
	감면율				0.03	0.01
미국령 버진제도	유효한계세율 (세법상 공제 모두 포함)			0.27	0.15	0.30
	유효한계세율 (감가상각 제외)			0.19	0.10	0.26
	법정한계세율					
	감면율			0.08	0.05	0.05

〈표 V-1〉에서 우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법상 공제를 포함한 유효한계세율의 추정값이 법정한계세율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는 21%였고 법정한계세율은 25%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는 34%였고 법정한계세율은 35%였다. 또한 프랑스의 2000년대 전반 유효한계세율은 34%, 법정한계세율은 33%였으며, 영국의 2000년대 전반 유효한계세율은 32%, 법정한계세율은 30%였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와 법정한계세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자비용 공제, 감가상각의 비용처리,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조세감면효과와 법정한계세율은 중앙정부에 대한 세부담에 기반하는 반면 유효한계세율은 지방세로 인한 조세부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세법상 공제를 모두 포함한 유효한계세율이 1990년대 후반에는 24%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21%로 낮아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유효한계세율의 하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료에 나타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감가상각의 회계상 비용처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유효한계세율은 1990년대 후반 18%에서 13%, 19%로 변동한 후 2000년대 후반 18%로 머물러 있다. 감가상각으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 비율은 7% 수준에서 오히려 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가상각 허용 폭이 전체적으로 크지 못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감면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감면율이 1980년대 후반 21%, 1990년 초반 7%, 1990년대 후반 4%, 2000년대 초반 0%, 2000년대 후반 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14%, 13%, 12%, 4%, 6%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수준과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20% 수준에서 2000년대 14% 수준으로 낮아졌고, 중국의 경우 4%에서 11% 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자면, 감가상각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적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들의 투자가 감소했음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감가상각제도 자체의 세부담 감면효과가 적음에도 기인하는 것이다¹⁶⁾.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감가상각제도에서 신규투자의 비용 중 보다 큰 부분을 초기에 공제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신규투자의 비용 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6)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면효과의 국가 간 차이가 투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감가상각제도 자체의 세부담 감면효과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제도를 파악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를 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국가별 감가상각제도의 비교를 통한 세부담 감면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VI. 법인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자본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하여

본절에서는 자본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세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과 이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VI-1>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변수들의 정의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산증가율은 자본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⁷⁾. 유효한계세율은 세법상 공제를 모두 포함한 유효한계세율로 추정되었으며, 법인세율은 법정법인세율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 GDP는 5개년으로 구성된 분석단위 중 최초 연도의 GDP를 의미한다. 무역개방도는 (수출+수입)/GDP로 계산되었는데, 무역개방도는 국가가 얼마나 세계시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 사실 자본의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역개방도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개방도를 이용하는 것이 개념상 더 잘 부합되나, 자본시장 개방도의 경우 측정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어 무역개방도를 대신 사용하였다.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산증가율은 평균적으로 14%이나, 기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된 기업들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의 평균은 약 27.9%였으며 법인세율의 평균은 32.1%였다.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인

17) 회계장부상의 자산총계는 미수금 등의 당좌자산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의 대용지표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OSIRIS 자료에서 투자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자산의 증가율과 투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에 자산의 증가율을 투자의 대용지표로 사용하였다.

해 유효법인세율이 법정법인세율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초기 GDP의 평균값은 14,943달러로 나타났으며, 무역개방도의 평균값은 77%로 나타났다.

〈표 VI-1〉 변수 및 기초 통계량

변 수	변수기호	관찰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산증가율	Assetgr	1385	0.144	0.358	-0.677	3.881
유효한계세율	MET_ijT0	1385	0.279	0.129	0.000	0.986
법인세율	TxRtCorp	1385	0.321	0.085	0.000	0.548
초기GDP	GDPpc	1385	14,943	10,492	216	47,281
무역개방도	TradeGDPAvg	1385	0.774	0.589	0.171	4.062

법인세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OLS(Ordinary Linear Square)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text{Assetgr} = \beta_1 \text{MET_ijT0} + \beta_2 \ln(\text{GDPpc}) + \beta_3 \ln(\text{GDPpc}) \cdot \text{MET_ijT0} \\ + \beta_4 \text{TradeGDPAvg} + \beta_5 \text{TradeGDPAvg} \cdot \text{MET_ijT0} + \beta X$$

자산의 증가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상정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증가시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β_1 은 음수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명변수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1인당 GDP와 경제개방도를 나타내는 무역개방도를 고려하였다. 이들 두 변수들과 유효한계세율 간의 각각의 교차항을 추가하였는데, $\ln(\text{GDPpcIni}) \cdot \text{MET_ijT0}$ 는 경제규모가 클수록 투자가 세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회귀식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text{TradeGDPAvg} \cdot$

VI. 법인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97

MET_ijT0는 개방된 국가일수록 투자가 법인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함이다.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무역개방도와 유효한계세율 간의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음수로 개방된 국가에서 법인세율의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강한가이다. 유효한계세율, 1인당 GDP, 개방도, 교차항들과 더불어 상수항, 산업더미, 기간더미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표 VI-2〉은 단순최소자승법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유효한계세율은 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일관성있게 나타났으며, (2)식은 이러한 유효한계세율의 투자 저해 효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식의 결과는 Lee et al.(2009)와 일관성 있는 결과로,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낮은 세율을 통한 법인의 투자 유도 효과가 점점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식에서는 1인당 GDP를 포함하지 않고 개방도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로 무역개방도와 한계세율의 교차항이 예견한 바와 같은 부(-)의 부호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식에서는 1인당 GDP와 무역개방도를 함께 포함하였으며, 추정결과 무역개방도와 한계세율 간의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2〉 산업별 투자요인 모형, 유효한계세율, OLS

	(1)	(2)	(3)	(4)
변수 \ 추정방식	OLS	OLS	OLS	OLS
유효한계세율	-0.332	-2.289	-0.307	-2.146
	(0.075)***	(0.539)***	(0.129)**	(0.563)***
ln(GDPpc)		-0.131		-0.137
		(0.018)***		(0.019)***
ln(GDPpc) · 한계세율		0.222		0.233
		(0.058)***		(0.061)***
무역개방도			-0.020	0.062
			(0.033)	(0.033)*
무역개방도 · 한계세율			-0.107	-0.317
			(0.140)	(0.138)**
Observations	1421	1421	1385	1385
R-squared	0.056	0.116	0.060	0.121

주: 1) 산업더미, 기간더미, 상수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 보고는 하지 않음.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정부가 법인세를 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자본의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의 OLS 분석방식은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우리는 각 국가에 대하여 주변국들의 유효법인세율의 가중평균을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IV)로 하여 다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주변국들의 유효법인세율의 가중평균의 가중치는 해당국가와 주변국 사이의 거리의 역수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VI. 법인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99

는 <표 VI-3>에 정리되어 있다. <표 VI-3>의 (4)열에 나타난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한 회귀분석의 결과 부호에 있어 앞서의 OLS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VI-3> 산업별 투자요인 모형, 유효한계세율, IV

	(1)	(2)	(3)	(4)
변수 \ 추정방식	IV	IV	IV	IV
유효한계세율	-0.398 (0.100)***	-1.790 (0.669)***	0.004 (0.215)	-1.165 (0.772)
ln(GDPpc)		-0.115 (0.022)***		-0.118 (0.024)***
ln(GDPpc) · 한계세율		0.164 (0.074)**		0.156 (0.080)*
무역개방도			0.083 (0.063)	0.147 (0.062)**
무역개방도 · 한계세율			-0.637 (0.309)**	-0.769 (0.306)**
Observations	1421	1421	1385	1385
R-squared	0.055	0.116	0.050	0.112

주: 1) 산업더미, 기간더미, 상수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 보고는 하지 않음.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여기서 유효한계세율의 계수는 ln(GDPpc)나 무역개방도 등의 설명 변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효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투자가 감소할 유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자산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자본의 축적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전통적 경제성장이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ln(\text{GDPpc}) \times \text{한계세율})$ 의 계수는 양(+)¹⁸⁾의 값으로 유효한계세율의 계수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발전해 있을수록 한계세율이 자산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경제규모가 클수록 자본의 법인세율 탄력성이 낮고 이에 따라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높게,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무역개방도의 계수는 양(+)¹⁹⁾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가 개방된 국가일수록 자본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text{무역개방도} \times \text{한계세율})$ 의 계수는 부(-)²⁰⁾로 유효한계세율의 계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무역개방도가 큰 국가일수록 자본증가율이 세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즉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lemrod(2004)는 1980~1995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의 결과로 경제의 개방도는 법인세율에 부(-)²¹⁾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Ramsey(1927) 이후 발전된 최적조세이론에 따르면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탄력성이 높은 것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탄력성이 낮은 것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경제의 개방도와 법인세율 사이에 부(-)²²⁾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Slemrod(2004)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앞서의 회귀분석 결과는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의 탄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정부가 자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표 VI-4>와 <표 VI-5>의 회귀분석은 법인세율로써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를 채택하여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유효한계세율은 추정에 있어 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법정 최고법인세율로 대체하여 IV 회귀분석을 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VI-6>에 정리되어 있다. <표 VI-7>와 <표 VI-8>을 비교하였을 때 계수들 사이의 크기의 차이는 있었으나 계수의 부호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다¹⁸⁾.

〈표 VI-4〉 산업별 투자요인 모형, 유효한계세율, IV

	(1)	(2)	(3)	(4)
변수 \ 추정방식	IV	IV	IV	IV
법정 최고법인세율	-0.610 (0.164)***	-1.160 (1.587)	0.383 (0.521)	-1.669 (1.647)
ln(GDPpc)		-0.094 (0.057)		-0.160 (0.064)**
ln(GDPpc) · 법정세율		0.039 (0.169)		0.237 (0.190)
무역개방도			0.298 (0.168)*	0.419 (0.173)**
무역개방도 · 법정세율			-1.352 (0.662)**	-1.758 (0.678)***
Observations	1421	1421	1385	1385
R-squared	0.041	0.105	0.042	0.102

주: 1) 산업더미, 기간더미, 상수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 보고는 하지 않음.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끝으로 〈표 VI-9〉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TradeGDPAvg와 유효한계세율과의 상관계수는 -0.3198였고, 법정세율과의 상관계수는 -0.3248로, 무역개방도가 증가할수록 유효한계세율과 법정세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Slemrod(2004)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18) 〈표 IV-4〉의 (2)식의 경우 계수들의 추정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한계세율과 법정세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0.5035로 법정세율이 높을수록 유효한계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W-5〉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구 분		TradeGDPAvg	MET_ijT0	MET_iT0	TxRtCorp
TradeGDPAvg	상관계수	1			
	p-value	0			
	관측수	162			
MET_ijT0	상관계수	-0.3198	1		
	p-value	0			
	관측수	162	166		
MET_iT0	상관계수	-0.3321	0.8272	1	
	p-value	0	0		
	관측수	162	166	166	
TxRtCorp	상관계수	-0.3248	0.5035	0.4977	1
	p-value	0	0	0	
	관측수	162	166	166	166

VI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OSIRIS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기간별-산업별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 및 감가상각의 회계상 비용처리를 통한 조세감면율을 추정·분석하고, 나아가 자본의 탄력성을 통한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추정된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와 법정한계세율은 정(+)¹⁹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몇몇 국가에서 보이는 유효한계세율과 법정한계세율의 차이는 유효한계세율 계산에 지방세가 고려된 점과 각종 조세감면제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은 1990년대 후반 24%에서 2000년대 후반 21%로 낮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8%p의 법인세율의 인하 효과 중 절반 이상이 법인의 투자 감소와 재무구조 개선으로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별 유효법인세율 분석 결과 통신·보건·유틸리티 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금융부문과 기술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그림 V-22]참조). 특히 금융부문과 기술부문의 낮은 유효한계세율은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금융지원 조치들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세감면비율의 국제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의 회계적 비용처리를 통한 감면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고 감가상각제도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⁹). 넷째, 투자의 법인세율에 대한 민감도

는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개방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시 법인들은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다른 국가로 투자처를 이전하는 반응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들의 투자 행위를 고려한다면 최적 법인세율은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더 낮아야 한다. 개방도와 자본세율간의 부(-)의 관계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최적조세는 탄력성이 높은 곳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탄력성이 낮은 곳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역탄력성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통한 조세감면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은 향후 법인세제 개편시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의 잔존가액의 폐지와 자산별 세법상 내용연수의 대폭 단축 등의 개편이 있는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세부담 감면 효과가 큰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²⁰⁾. 최근 상시적인 세액공제 허용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대신 감가상각제도의 세부담 감면 효과가 좀 더 크도록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정책조합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회귀분석을 통해 개방국가로 갈수록 자본의 탄력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

19)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유효법인세율 증가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300% 상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106%까지 떨어진 바 있다.

20)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비율 역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이자비용의 감소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법인세로 인한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개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곽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1985.
- 곽태원 · 이병기 · 현진권,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연구 05-30, 한국경제연구원, 2005.
-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K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51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 5~34.
-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3,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5-08,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우철 · 구자은 · 송은주,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세법연구 08-11, 한국조세연구원, 2008.
- 김유찬 · 주기중,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2004, pp. 168~185.
-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3-05,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학수,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9.8.
-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p. 6~30.
- 원윤희, 『유효한계세율의 측정을 통한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 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1996, pp. 113~115.

- 원윤희 · 현진권, 『한국의 유효한계세율: 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분석』, 제6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0.
- 윤건영, 『자본소득과제와 투자유인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 제4권, 한국조세학회, 1988, pp. 261~288.
- 윤건영 · 김중웅,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조세정책의 효율성 평가: 자본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제10권, 한국조세학회, 1995, pp. 37~79.
- 윤건영 · 김중웅, 『한국의 법인투자 유효한계세율』, 『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1997, pp. 162~199.
- 윤건영 ·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 이윤재 · 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1986-1997』,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4, pp. 111~128.
- Agell, J., Lindh, T. and Ohlsson, H., "Growth and the public sector: A critical review ess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3(1), 1997, pp. 33~52.
- Auerbach, A. J., "Wealth Maximiz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3(3), 1979, pp. 433~446.
- Auerbach, A. J., "The Theory of Excess Burden and Optimal Taxation," in Auerbach, A. J. and Feldstein, M. (ed.)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Elsevier, 1985, pp. 61~127.
- Auerbach, A. J. and Hines, J. J., "Tax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in Auerbach, A. J. and Feldstein, M. (ed.)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3, Elsevier, 2002,

pp. 1347~1421.

- Ballard, C. L., Fullerton, D., Shoven, J., Whalley, J.,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Djankov, S., Ganser, T., McLiesh, C., Ramalho, R. and Shleifer, A.,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NBER Working papers, No. 1375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8.
- Dowrick, S., "Estim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 Consumption on Growth: Growth Accounting and Endogenous Growth Models," *Empirical Economics*, Vol. 21(1), 1996, pp. 163~186.
- Dreher, A., Sturm, J. and Ursprung, H.,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s: Evidence from Panel Data," *Public Choice*, Vol. 134(3), 2008, pp. 263~292.
- Easterly, W. and Rebelo, S.,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Elsevier, Vol. 32(3), 1993, pp. 417~458.
- Fullerton, D., "Which Effective Tax Rate?," NBER Working papers, No. 112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4.
- Goalsbee, A., "Taxes, Organizational Form, and the Deadweight Los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9(1), 1998, pp. 143~152.
- Gordon, R. H. and MacKie-Mason, J. K., "Tax Distortions to the Choice of Organizational 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5(2), 1994, pp. 279~306.

- Gordon, R. H. and MacKie-Mason, J. K., "How Much Do Taxes Discourage Incorporation?," *Journal of Finance*,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Vol. 52(2), 1997, pp. 477~505.
- Gravelle, J. G. and Kotlikoff, L. J.,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Costs of Corporate Taxation When Corporate and Noncorporate Firms Produce the Same Goo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4), 1989, pp. 749~780.
- Harberger, A. 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1962, pp. 215~240.
- Harberger, A. C., "Efficiency Effects of Taxes on Income from Capital," in M. Krzyaniak (ed.),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es*,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Detroit, 1966.
- Jones, L. E. and Manuelli, R. E., "A Convex Model of Equilibrium Growth: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5), 1990, pp. 1008~1038.
- Jones, L. E., Manuelli, R. E. and Rossi, P. E., "On the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NBER Working Papers, No. 45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3.
- Jorgenson, D.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2), 1963, pp. 247~259.
- Jorgenson, D. W. and Landau, R.,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rookings Institution, 1993.

- Jorgenson, D. W. and Sullivan, M. A.,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R. Hulten (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Urban Press Institute, Washington D.C., 1981.
- Jorgenson, D. W. and Yun, K.,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Jorgenson, D. W. and Yun, K-Y.,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in the US," in Alberto Heimler and Danièle Meulders (eds.), *Empirical Approaches to Fiscal Policy modelling*, Chapman & Hall, 1993, pp. 9~24.
- King, M. A. and Fullerton, D. (ed.),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West German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ing, R. G. and Rebelo, S., "Public Policy and Economic Growth: Developing Neoclass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98(5), 1990, pp. 126~150.
- Koester, R. B. and Kormendi, R. C., "Taxation, Aggregate Activity and Economic Growth: Cross-Country Evidence on Some Supply-Side Hypotheses," *Economic Inquiry*, Oxford University Press, Vol. 27(3), 1989, pp. 367~386.
- Lee Y., Sung T. and Kim, T., "Cross-Sector Tax Different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Analysis," *Working paper*,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009.
- Lee, Y. and Gordon, R. H.,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5-6), 2005, pp. 1027~1043.

- Leibfritz, W., Thornton, J. and Bibbee, A.,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6, OECD, 1997.
- Lucas Jr., R. E., "Supply-side economics: an analytical review," *Oxford Economic Papers*, Vol. 42(2), 1990, pp. 293~316.
- Mendoza, E. G., Milesi-Ferretti, G. M. and Asea, P., "On the Ineffectiveness of Tax Policy in Altering Long-Run Growth: Harberger's Superneutrality Conjec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6(1), 1997, pp. 99~126.
- Mieszkowski, P. M., "On the Theory of Tax Inc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1967, pp. 250-262
- Ramsey, F. P.,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Vol. 37, 1927, 47~61.
- Rebelo, S., "Long-Run Policy Analysi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3), 1991, pp. 500~521.
- Shoven, John B.,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Effects of Taxes on Income from Capit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6), 1976, pp. 1261~1283.
- Skinner, J. S., "Taxation and Output Growth: Evidence from African Countries," *NBER Working Papers*, No. 233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7.
- Slemrod, J., "Are corporate tax rates, or countries, converg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6), 2004, pp. 1169~1186.
- Stewart, K. and Webb, M.,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corporate taxation: evidence from the OECD time series," *Economic Policy*, Vol. 21(45), 2006, pp. 153~201.

- Stiglitz, J. E., "The Corporation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3), 1976, pp. 303~311.
- Stokey, N. L. and Rebelo, S. "Growth Effects of Flat-Rate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3), 1995, pp. 519~550.
- Tobin, J.,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o Monetary Theor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1), 1969, pp. 15~29.
- Winner, H., "Has Tax Competition Emerged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Panel Data,"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2(5), 2005, pp. 667~687.

〈부록〉 주요국의 법인세제 현황

1. 미국

미국의 법인세는 자국 내에 설립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내국법인은 미합중국법 및 각 주법에 의하여 미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의미한다. 세법상 법인의 유형은 일반법인(C corporation), S-법인(S corporation)²¹⁾, 파트너십(Partnership),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로 구분하며, 이 중 일반법인은 개인과 같은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방법인세가 부과되며, 외국법인의 경우는 미국에 귀속되는 영업상의 소득 및 미국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및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하여 연방법인세를 부과한다.

과세소득은 세법상 규정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상의 영업비용 공제 및 자본비용 상각을 통해 산출된다. 법인세 과세소득 결정방법은 〈부표 1〉과 같다.

21) S-법인(S corporation)은 주식회사의 한 종류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법인(C corporation)이 연방국세청(IRS)의 승인을 받은 세법상의 법인형태이다. S-법인의 법적인 형태는 법인이지만 세법상 파트너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S-법인은 회사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주주들이 회사의 순이익과 손실분을 자신의 지분에 따라 각자의 개인 세금신고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며, 세금신고 이외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다.

〈부표 1〉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방식

분류	항목
소득	총(판매)수입 - 반환 및 면제(return and allowance) <u>- 판매비(재고+매입경비+노동비용+기타비용-연말재고)</u>
	총이윤 + 배당 ¹⁾ + 이자 + 임대료 + 로열티수입 + 양도수익 + 기타소득
	총소득
공제	임원보상 + 임금 + 보상유지비 + 대손금 + 임대료 + 세금 + 이자비용 + 자선기부금 + 감가상각비 + 감모상각비 + 광고비 <u>+ 연금, 이익배분 + 피용인 부가급부 + 기타공제</u>
	순영업손실(NOL) 및 특별공제 이전의 과세소득 <u>- 순영업손실(NOL) - 특별공제²⁾</u>
	과세소득

주: 1) 일반 배당수입은 일부만 공제될 수 있고 계열회사나 일부 외국기업,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100% 공제됨.

2) 특별공제는 배당수입공제와 국내생산공제를 의미

자료: 미국 국세청(IRS),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2009.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2009에서 재인용

개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부록 2〉와 같이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서비스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에 따라 누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35%의 일률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서비스법인은 해당 법인의 모든 활동이 개인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며, 종업원 및 퇴직종업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유된 주식가액의 95%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상당한 경제적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제와 면제혜택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TM)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년간 평균 총수입이 7,500만달러(이전 1년간은 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

는다. 최저한세는 최저한세과세소득(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AMTI)에서 4만달러의 표준면제를 적용한 금액에 최저한세 세율 20%를 곱하여 산출된다. 산출된 최저한세가 법인세액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고, 법인세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부표 2〉 미국의 연방법인세 세율

(단위: 달러)

과세소득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0 초과	50,000 이하	15%	0
50,000 초과	75,000 이하	7,500 + 25%	50,000
75,000 초과	100,000 이하	13,750 + 34%	75,000
100,000 초과	335,000 이하	22,250 + 39%	100,000
335,000 초과	10,000,000 이하	113,900 + 34%	335,000
10,000,000 초과	15,000,000 이하	3,400,000 + 35%	10,000,000
15,000,000 초과	18,333,333 이하	5,150,000 + 38%	15,000,000
18,333,333 초과		6,416,667 + 35%	18,333,333

자료: 미국 국세청(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2006.

미국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광범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일괄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제도는 없으나 특정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²²⁾. 미국의 설비투자에 관련한 세액공제들로는 투자세액공제,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주택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설비세

22) 투자세액공제(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에너지세액공제/청정석탄산업세액공제/가스화사업세액공제),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주택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제품세액공제, 탁아시설공제

액공제, 탁아시설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 3>에 정리하고 있다. 이 중 투자세액공제는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에너지세액공제,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가스사업세액공제의 4가지 자산의 세액공제를 포함하며, 이월 공제한도금액의 적용을 받는다.

〈부표 3〉 미국의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

	대상자산	지원내용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¹⁾	- 1936년 이전에 설립된 적격재건건물	- 적격재건비용의 10% 세액공제 · 역사적 건물: 20%
에너지세액공제 ¹⁾	- 적격한 연료전지설비, 태양에너지난방설비, 태양에너지조명설비 - 기타 에너지설비	- 과세기준금액의 30% 세액공제 - 과세기준금액의 10% 세액공제
청정화석탄사업세액공제 ¹⁾	- IRS가 승인한 석탄가스복합발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투자액의 20% 세액공제 - 투자액의 15% 세액공제
가스화사업세액공제	- IRS가 승인한 석탄가스화설비	- 투자액의 20% 세액공제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	- 저유황디젤연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시설 및 기존시설의 건설비용	- 저유황연료 갤런당 5센트
에너지효율화주택세액공제	- 대상: 에너지효율화주택제조업자 - 에너지효율화주택	- 에너지절약 정도에 따라 주택당 \$1,000/2,000 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제품세액공제	- 대상자: 가정용품 제조업자 - 에너지효율화가전제품	- 과거 3년 평균매출액의 2%
탁아시설세액공제	- 납세자가 보유하고 탁아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의 취득 및 운영비용	- 관련비용은 2%, 한도액은 \$150,000

주: 1) 투자세액공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2008.

미국은 감가상각제도에 있어 특별비용공제제도와 초년도 특별상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6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MACR (Modified Accelerated Recovery System)는 200%의 정률법에 의한 일반상각방식(GDS: General Depreciation System)과 150%의 정률법에 의한 대체상각방식(ADS: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의 정률법 또는 150%의 정률법 이외에 사업용 상각자산에 대한 특별비용공제와 내용연수 20년 미만의 유형자산, 수도시설 등에 대한 초년도 특별상각과 같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감가상각제도의 현황은 〈부표 4〉와 같다. 이와 같은 설비투자지원 외에도 연구개발투자지원을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³⁾.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은 기준금액(base amount)²⁴⁾ 초과분과 적격연구개발비의 50% 중 작은 금액의 20%이다.

23) 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하지만 중복적용은 불가

24) 기준금액은 직년 4년간의 평균매출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됨(적용 비율은 1984.1.1~1988.12.31 동안의 총매출액 대비 적격연구개발비 비율이며 16%를 한도로 함)

〈부표 4〉 미국의 감가상각률

구분	대상자산	상각률	적용요건
특별비용 공제	사업용 상각자산	한도액: 250,000달러 ¹⁾	투자액: 800,000달러 미만 ²⁾
초년도 특별상각 ³⁾	내용연수 20년 미만의 유형자산, 수도시설, 컴퓨터소프트웨어	50%	'07~'09년에 구입하고 해당기간에 사용이 시작된 자산
일반 감가상각	컴퓨터, 사무용품, 실험용품 등의 감가상각자산	200% 정률법 150% 정률법	-
	건물	정액법	

주: 1)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따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액이 증가되었고, 2011년부터는 25,000달러 적용 예정
 2) 800,000 달러 초과시 공제액 감소
 3)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따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2008.

2. 영국

영국의 경우 회사법(Company Act)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및 법인격 없는 단체, 건축협회(주택대출금융조합), 상호보험협회, 국영기업, 공공사업회사, 왕실법인,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등의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기간 동안의 법인 수익에서 사업상 필요경비(비용)를 공제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되며 자본이득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영국 내 사업이익, 자유직업소득, 이자·연금·로열티 및 기타 연차지불금, 외국소재 재산으로부터의 소득, 영국 내 부동산에서의 임대료 수입 및 프리미엄, 영국 거주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영국의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영국의 법인세율은 52%에 달하였으나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초기연도 공제가 폐지되면서 35%로 낮아졌다. 이후 영국의 법인

〈부록〉 주요국의 법인세제 현황 119

세는 1998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31%, 1999년에는 30%, 2008년에 28%로 점차 낮아졌다. 2009년 현재 주법인세율(main rate)은 28%이고 이는 법인이익이 150만파운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법인이익이 30만파운드 이하의 소기업인 경우 21%의 초기세율(starting rate)이 적용되며, 법인이익이 30만파운드 이상 150만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기 위하여 한계공제계수(marginal relief)가 주어진다. 법인의 한계공제액은 소기업에 대한 이윤 상한에서 이윤을 차감하고, 이에 이익에서 기초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것에 한계공제계수를 곱하여 정해진다.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은 〈부록 5〉와 같다.²⁵⁾

〈부표 5〉 영국의 법인세율

(단위: %, 파운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소기업에 대한 초기세율	20	21	21	21
주법인세율	30	28	28	28
신탁(trusts) 및 개방형투자회사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에 대한 특별세율	20	20	20	20
소기업에 대한 이윤제한(하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소기업에 대한 이윤제한(상한)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소기업에 대한 한계공제 계수	1/40	7/400	7/400	7/400

주: 폐쇄형투자회사는 소기업이나 초기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윤수준에 관계없이 정상세율 적용

자료: www.hmrc.gov.uk/rates/corp.htm

25) 과세구간별 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음

30만파운드 이하: 21%, 30만파운드 초과 150만파운드 이하: 29.75%,
150만파운드 초과: 28%

영국은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과 같은 일반적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없으며 1997년부터 특정자산 및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상의 자본지출에 대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본공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년 일정비율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Capital Allowance Act 2001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감가상각인 자본공제와는 별도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의 경우 구입 첫해에 자산의 유형이나 업종,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40% 또는 100%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초년도감가상각(First-year Allowance)을 실시하고 있다. 40%의 초년도 감가상각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중기업의 설비 및 기계에 대한 투자이며, 소기업은 설비 및 기계투자에 대해 50%의 초년도감가상각률을 적용받는다. 또한 100%의 초년도감가상각률을 적용받는 대상은 에너지절약설비에 초년도 50,000파운드 이상 지출한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차량, 환경보전을 위한 설비, R&D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이다. 영국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및 상각률 현황은 <부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영국은 R&D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초년도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 R&D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출비용의 1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75%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 250명 이하의 기업으로 연매출액 5,000만 유로 또는 자산합계가 4,3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7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 연구개발비가 10,000파운드를 초과해야 한다.

〈부표 6〉 영국의 감가상각률

(단위: %)

구분	상각률		대상기업
자본공제	설비 및 기계	20	모든기업
	산업용 건물 ^{1),2)}	4 (enterprise zones는 25)	
	농업용 건물 ¹⁾	4	
	Know-how 및 특허권	25	
초년도상각	설비 및 기계	40	중기업
		50	소기업
	에너지절약설비 및 기계에 초년도 5만파운드 이상 지출	100	모든기업
	CO ₂ 배출저감차량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을 위한 설비		
	건물의 리노베이션		
R&D에 대한 자본적 지출			

주: 1) 산업용 건물 및 농업용 건물에 대한 자본공제는 2011년 4월까지

2) 비산업용 상업건물(예: 상점 등)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외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2008.

3.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유형에 따라 다르다. 캐나다 법인은 과세목적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뉘고, 비상장법인은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program: CCPC)과 그 외의 비상장법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특정 정부지배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 법인은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 법인의 경우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소득, 자산소득,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에 과세된다. 사업소득 및 자산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되나, 자본이득은 실현주의에 의해 계산된다. 사업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자산소득에는 임대료, 이자 및 로열티수입, 배당수익, 투자수익 등이 해당된다. 자본이득은 실현된 이득의 50%가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또한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비용 및 자본지출에 대하여 잔액차감방식(diminishing-balance basis)의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연방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38%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10%의 공제가 허용되어 실제 적용세율은 28%이다. 4%의 법인부가세(corporate surtax)는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조세특혜를 받지 못하는 지방 발생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축소된 일반세율(2009년 현재 19%)을 적용한다. 내국인 소유 비상장법인의 경우 2008년 1월 현재 적극적인 사업(active business)로부터 얻는 500,000CAD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17%의 중소기업특별공제(SBD) 혜택을 받으며 11%의 세율이 적용된다²⁶⁾.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에 위치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여러 주에 소득이 분산된 경우 지역별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이중세율(dual tax rates)체계를 기본으로 중소기업특별공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저세율(lower rate)로, 기타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고세율(higher rate)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각 주정부의 법인세율 현황은 <부표 7>과 같다.

캐나다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목적의 건물, 기계류 및 장비 등과 같은 적격자산(qualified property)을 취득하기 위한 설비투자의 경우 10%의 투자세

26) 2009년부터 중소기업공제 한도가 400,000CAD에서 500,000CAD로 상향 조정되었음.

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적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지역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는데,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 New Brunswick, Nova Scotia 주정부 및 Quebec주의 Gaspé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부표 7〉 캐나다의 주정부 법인세율

(단위: %, CAD)

구분	저세율	고세율	기준금액
Alberta	3.0	10.0	500,000
British Columbia	2.5	10.5	500,000
Manitoba	1.0	12.0	400,000
New Brunswick	5.0	13.0	500,000
Newfoundland and Labrador	5.0	14.0	400,000
Northwest Territories	4.0	11.5	400,000
Nova Scotia	5.0	16.0	400,000
Nunavut	4.0	12.0	400,000
Ontario ¹⁾	5.5	14.0	500,000
Prince Edward Island	1.0	16.0	400,000
Quebec	8.0	11.9	400,000
Saskatchewan	4.5	12.0	500,000
Yukon	4.0 ²⁾	15.0	400,000

주: 1) 2010년 7월 1일부터 저세율은 4.5%로 고세율은 12%로 조정 예정

2) 제조 및 가공업 소득(manufacturing and processing income)에 대해서는 2.5%의 특별세율 적용

자료: 캐나다 국세청(www.cra-arc.gc.ca)

또한 캐나다는 과학적 연구개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도 실시하고 있다. SR&ED 공제는 신기술개발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로서 캐나다 내의 모든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SR&ED 공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임금, 재료, 기계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투자공제가 가능하다.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CPC)의 경우 일반적으로 SR&ED 지출의 첫 300만CAD에 대하여 35%,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의 법인, 자영업자, 파트너십 등의 경우 20%의 공제가 가능하다. SR&ED 공제율 현황은 <부표 8>과 같다. 한편, 캐나다는 이와 같은 연방 차원의 투자지원 외에도 주정부별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표 8〉 SR&ED 공제율 현황

구분	공제율	반환가능성	
		경상지출	자본지출
개인 및 비법인	20%	×	×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CPC)			
* 과세소득 50만CAD 이하			
- 지출금액 300만CAD 이하	35%	100%	40%
- 지출금액 300만CAD 초과	20%	40%	40%
* 과세소득 50만CAD 초과	20%	×	×
대기업	20%	×	×

4. 일본

일본은 전통적인 법인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하고,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는 주주단계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액은 수취배당소득공제

(dividend received deduction rule)를 통해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하다.

일본의 법인세법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내국법인에는 보통법인, 공공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있다. 보통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등이 해당하고 법인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지방 공공단체, 공사 등의 공공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공공법인에 속하지 않는 각종 사업단 등의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으로 간주하여 수익사업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청산소득의 경우 내국보통법인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공익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의 청산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일본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갖는다.

일본은 법인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법인세는 보통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30%를 적용하며,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보통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8%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는 18%, 8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법인유형별 법인세율은 〈부표 9〉와 같다.

한편, 일본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일반소득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토지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special surtax)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부표 9〉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세율	
보통법인 및 법인격없는 사단	중소기업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	18
		연 소득액 800만엔 초과	30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등		30
일반사단법인 등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	18	
	연 소득액 800만엔 초과	30	
공익법인 등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	18	
	연 소득액 800만엔 초과	22	
협동조합 등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	18	
	연 소득액 800만엔 초과	22	
특정의료법인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	18	
	연 소득액 800만엔 초과	22	

주: 1. 2009년 연 소득액 800만엔 이하에 대한 법인세 경감세율이 22%에서 18%로 인하되었음

2.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자료: 일본국세청, 『平成21年度法人税関係法令の改正の概要』

일본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생산액비례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계 및 장치 등의 설비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정률법으로 강가상각방법을 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잔존가액 및 상각가능한도액 폐지, 정률법에 대한 상각률 수정, 법정내용연수의 수정 등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가속상각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즉, 개정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이 정률법을 선택하는 경우 먼저 감가상각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 상각률의 250%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상각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250% 정률법)이다. 또한 250% 정률법 이외에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특례조치로는 감가상각 특례제도가 있다. 이는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하여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조치로, 오키나와 특정 중소기업자가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경영기반강화계획을 실시하는 지정중소기업자의 기계 등의 할증상각, 특정 지역에 대한 공업용 기계 등의 특별상각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액공제제도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시험연구비가 증가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4가지이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색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액공제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10%이고 연구개발비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text{연구개발비 비율} \times 0.2) + 8\%)$ 를 세액공제비율로 한다²⁷⁾.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연구개발비의 12%이며, 최대 공제가능 금액은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표 10〉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7) 연구개발비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부표 10〉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명	특별공제	적용기간
에너지수급구조개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취득가액의 7%	1992.4.1~2008.3.31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취득가액의 7%	1998.6.1~2008.3.31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취득가액의 7%	1989.9.1~2009.3.31
오키나와 특정 중소기업자가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취득가액의 15%	2002.4.1~2012.3.31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취득가액의 10%	2006.4.1~2008.3.3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외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2008.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02년 이전에는 주주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때 법인단계에서 부과한 세금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imputation system)를 운영하였으나, 공제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도나 운영 등의 복잡성을 이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일원적 법인세제(one-tier corporate tax system)를 시행하였다. 일원적 법인세제하에서 법인소득은 법인단계에서만 과세되며 주주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원적 법인세제의 시행 당시 대부분의 회사들은 누적된 배당세액공제액을 완전히 소진할 수 없었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5년 동안의 경과기간을 두어 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기존의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전면적인 일원적 법인세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현재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²⁸⁾.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부과되며 정부기관 및 협동조합, 자선단체 등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과세목적상의 회사에는 회사법(Company Act) 등에 의한 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해외 등록법인 등이 포함되며,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이들 회사의 국내 발생 소득 또는 싱가포르 밖에서 발생하였으나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이다²⁹⁾. 법인세 과세표준은 과세소득에서 각종 사업상 지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과세소득에는 사업상의 수익 및 이자·임대료·로열티·프리미엄소득을 포함한다. 또한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표 11〉은 2009년 현재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현황을 보여준다.

〈부표 11〉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항목	세율
법인세율	18%
자본이득세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과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5%
특허료에 대한 원천징수	10%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www.edb.gov.sg)

싱가포르는 자본지출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용건물 및 구조물의 경우 구입 첫해에 자본지출의 25%를 감가상각하고 매년 3%의 연차상각(Annual Allowance)을 허용한다. 기계장치의

28) 이는 2010년에 17%로 1%p 낮아질 예정이다.

29) 자영업자(sole-proprietorship) 및 파트너십(partnership)은 제외

경우 구입 첫해에 자본지출의 20%를 감가상각하고 구입비용의 80%를 5년부터 16년에 걸쳐 연차 상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사업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자본지출에 대하여 구입 첫해에 75%를 상각하고 다음해에 25%를 상각하도록 허용하는 가속상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화설비 및 에너지절약설비 등에 대해서는 100%의 감가상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31일까지 지적재산 취득을 위한 자본지출에 대해 5년간 정액상각(즉, 연 20%) 혜택을 부여하며 2006년 2월 17일 이후 시작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100%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싱가포르의 감가상각률 현황은 <부표 12>와 같다.

〈부표 12〉 싱가포르의 감가상각률

구분	상각률
기계장치 (Plant and machinery)	최초상각: 20% 나머지 비용은 5~16년간 연차상각
산업용 건물 및 구조물 (Industrial buildings and structures)	구입 첫해: 25% 연차상각: 3%
승인된 노하우 및 특허권, 지적재산권	20%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www.edb.gov.sg)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2010년 현재 17%로 2009년 18%에서 1%p 인하되었다. 또한 과세소득의 최초 10,000SGD에 대하여 75%, 다음의 290,000SGD에 대하여 50%의 부분 조세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에 대하여 설립 후 3년간 최고 100,000SGD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전액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다³⁰⁾. 2008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과세소득

30) 전액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으로 싱가포르 납세자로서 해당연도 주주가 20인 이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200,000SGD에 대하여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전액 조세감면 및 부분 조세감면제도 외에도 경감세율, 투자공제 및 각종 특별공제 등 다양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지원은 전 산업에 적용되며, 특히 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서비스부문의 경우 각종 면제혜택 및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글로벌기업 등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하여 5% 또는 10%의 양여세율(concessionary tax rates)을 적용하고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본사유치패키지(International Headquarters Incentive)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도기업에 대해 5~1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후발기업은 20년간 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용, 지적재산권비용, 시장개발비용, 해외투자비용 및 금융연구개발비용 등에 대한 특별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 신설법인의 경우 전액 조세감면 대신 부분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국문요약>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이 영 · 조명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 70여개 국가-산업-시기별 유효법인세율을 추정·분석하고,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함에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을 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유효법인세율을 추정하여 이를 비교하여 감면율도 추정하였다.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70여개국의 기업재무데이터인 OSIRIS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 및 감가상각의 회계상 비용처리를 통한 조세감면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율은 비교대상국가들 중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율 감면율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낮은 감가상각을 통한 조세감면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자체가 줄었음에도 기인하지만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다수의 선진국보다 높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의 잔존가액의 폐지와 자산별 세법상 내용연수의 대폭 단축 등의 개편이 있는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세부담 감면효과가 큰 감가상각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국가-산업별-시기별로 추정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투자의 법인세율 민감도를 추정하였다. 다른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개방도와 법인세율 간의 교차항을 법인투자의 결정요인으로 포함하여 회귀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개방된 국가에서의 법인 투자가 법인세

율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을 보다 낮게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Abstract〉

International Comparative Approach to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Young Lee · Myeonghwan Cho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stimate the effective rates of corporate tax and compare them by countries, industries, and periods. In addition, this report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effective rates of corporate tax.

To this end, we used OSIRIS data provided by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OSIRIS data contains financial data and other information for the companies from over 130 countries. Using OSIRIS data, we estimated the effective rate of corporate tax and measured the effect of depreciation allowance on corporate tax burden for each country. We found that,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effective rate of corporate tax in Korea is moderate but the depreciation allowance is less favorable to the companies. Considering that the depreciation allowance system in Korea has not been changed since 1995, the less favorable depreciation allowance implies that Korea may need to modify its depreciation allowance system to be more favorable to the companies.

We also estimat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elasticities of capital stock. Other than the previous studies, we considered the openness multiplied by corporate tax rate as an explanatory variable. From the estimation, we found a tendency that the elasticity of capital increases as the openness of economy increases. This yields a policy implication that it is reasonable for more open country to have a low corporate tax rate.

〈著者略歷〉

이 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경제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 명 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 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2010년 6월 23일 인쇄
2010년 6월 30일 발행

저 자 이 영·조명환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47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